-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2. 관직과 관계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1) 정치구조의 정비

조선의 중앙 정치구조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최고 의결·국정기관에 도평의사사가 있고, 그 아래로 문하부·삼사·예문춘추관·중추원·사헌부·개성부·6조, 상서사·성균관·각문·훈련관·서운관과 봉상시·교서감 등 寺·監 및 10衛, 사선서·요물고·풍저창 등 署·庫·倉, 내시부·액정서와 전악서·아악서가 등차적으로 편제되어 각각에 부여된 일을 맡았다.

이들 여러 관아의 국정 수행을 위한 상호관계를 보면 도평의사사는 6조와 시·감·창·고·서 등을 총령하면서 국정을 논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지휘하였다. 6조와 시·감·창·고·서는 그 관아의 정사를 직접 국왕에게 주달하여 재결을 받아 시행하기도 하나!) 대개는 도평의사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각각에 규정된 정무를 집행하였다. 2) 6조와 시·감·창·고·서는 국정을 명확히 분장하지 못하였고, 6조는 장관(전서)이 朝政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시·감·창·고·서를 확고하게 지휘하지 못하였다. 또 6조·시·감 등의 지휘체계와 관직명은 상서사·성균관·훈련관을 제외한 6조 등 모두가장관과 차관이 2인이며, 낭관은 녹직과 겸직이 복합되었다. 직질이 같아도 관직명이 관아에 따라 달랐고, 관직명이 같아도 직질이 관아에 따라 다르기도 하여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¹⁾ 崔承熙, 〈朝鮮 太祖의 王權과 政治運營〉(《震檀學報》64, 1987), 159~160\.

²⁾ 韓忠熙, 〈朝鮮初期 議政府研究(상)〉(《韓國史研究》31, 1980), 115~118쪽.

이러한 개국 초의 정치구조는 마지막《經國大典》(乙巳大典)이 반포되는 성종 16년(1485)까지 왕권·의정부기능, 6조의 지위향상과 서무분장, 6조 屬司·屬衙門制의 정비, 제주(提調)제 등 겸직제의 정비, 冗官혁거, 1인의 장관을 정점으로 한 획일적인 관직제정비, 재정긴축 등과 함께 조선적인 것으로 정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고, 의정부가 정권을 專掌함에 따라 도평의사사 중심의 국정 운영체제가 의정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부수되어 중추원이 삼군부로 개칭되고 병권을 전장하였으며, 중추원 승지가 승정원으로 독립되었다.
- (2) 태종 원년(1401) 의정부에 합속되어 있던 문하부가 혁거되면서 宰臣은 의정부적인 명호로 개칭되고 郎舍는 사간원으로 독립되었다. 예문춘추관이 예 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립되었고, 승정원이 다시 승추부에 합속되었으며, 의흥삼 군부 등이 승추부 등으로 개칭되고 사헌부 등의 中丞・侍史・雜端 등이 執義・ 掌令・持平 등으로 개칭되었다. 사간원 左・右散騎常侍가 혁거되고 左・右諫議 大夫가 정3품 通政大夫 좌・우사간으로 승질・개칭되었고, 교서감이 교서관으 로 개칭되면서 少監 이상 관이 혁거되었다. 동 3년에 6조의 장관과 6寺 7監의 장・차관도 각각 1인으로 조정되었다.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가 설치되면서 都 總制・摠制・同知摠制・僉摠制를 두었고, 上・大護軍을 節制使・僉節制使로 개 칭하였다. 또 德泉庫 등을 內贍寺 등으로 개칭하였고. 司水監 등을 司幸監 등에 합속하였다. 동 5년에 6조는 典書・議郎을 혁거하고 정2품의 판서와 정3품 당 상의 참판을 두었다. 이 직후 6조에 각각 3속사를 두어 해당 조의 일을 분장하 게 하였고, 의정부 등 2품 이상 10여 아문을 제외한 70여 3품 이하 아문을 그 관아의 담당 직무에 따라 6조에 분속시키고 6조로 하여금 그 아문의 행정과 인 사를 지휘하게 하였다. 동 14년에 시・감 등의 令・副令과 正・副正을 尹・少 尹、監・少監을 正・副正으로 체계화하였다.3)
- (3) 세종 2년(1420)에 集賢殿을 설치하고, 領殿事 이하의 겸관과 副提學 이하의 禄官(전임관)을 두었다. 동 5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임시기관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그 관아를 통섭한 제주와 시·감 등에 광범하게 설치된 兼判事를 통합해각 관아별로 제주수, 實案(例兼)提調를 상정하였다.4) 또 開城留後司·敦寧府·仁壽府와 通禮門 등의 관원 70여 인을 태거하였다. 동 15년에는 7년 이래로 禮資

^{3) 《}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정월 계사. 통례문 등의 4품 이하도 僉知事・判官・注簿・丞・副丞・副直長・錄事・副錄事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金松姫、〈朝驛初期의「提調」制에 관한 研究〉(《韓國學論集》12, 漢陽大, 1987), 40~49等.

寺 등에서 운영하던 久任官制를5) 공조・인수부 등 10여 관아로 확대하였다.

- (4) 문좃 원년(1451)에 국초부터 당시까지 변천되면서 우영되어 온 3軍-12 司制의 군령체제를 3軍- 5司制로 개편하였다.6)
- (5) 세조 2년(1456)에 세종 초 이래의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동 6년에 종친 부・병조 사헌부・인수부・사간원・한성부・선공감 등 40여 관아의 관원 90여 인을 감원하였고. 경창부를 폐지하였으며, 도관서 등을 사선서 등에 합속하고 전농시 등을 사선시 등으로 개칭하였다 동 12년에 의빈부・병조・한성부・사간 원·변정원 관원을 감원하였고. 시·감·창·고·서 등 관아 정3품 당하관 이 하의 명칭을 正・副正・僉正・判官・主簿・奉事・副奉事・參奉으로 일원화하였 다. 오위진무소・중추원・상서사 등을 五衛都總府・中樞府・尙瑞院 등으로 개 칭하였고, 호·형조에 算士・明律 등 本業人(전문직업인)을7) 두었다. 또 구임관 제도 크게 확대하였다. 세조 12년의 이 관제개편으로 조선의 중앙관제는 거의 정립되었다.
- (6) 성종 원년(1470) 사간원에 正言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領敦寧府事 등 관 직을 복설하였으며, 예문관관을 증치하였다. 동 15년 이전에 호조와 형조에 전 문직인 종6품의 敎授와 別提를 증치하였다.8) 동 15년에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개칭・승격하고, 의빈부 관직명을 某某尉로 개칭하였다. 성종 15년에 개편된 이 직제가 마지막 《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조선의 중앙관제는 확립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정치구조는 개국 초의 도평의사사 체제에서 의 정부・6조체제로 개편되었다. 도평의사사는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소멸되고,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통령하였다. 6조는 정2품 아문으로 격상 되고, 속사·속아문제의 정비와 함께 서무를 분장하였다. 정3품 이하 여러 아무은 6조·제주(제주설치아문)나 6조(무제주아문)의 지휘를 받아 맡은 일 을 처리하였다.

⁵⁾ 빈번한 관직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효과 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사・의례・외교・소송・군수・회계・창고・ 궁중사무를 관장하는 관아에 약간의 장기근무자를 확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세종 19년 · 세조 6년에 걸쳐 그 설치 관아와 인원수가 크게 확대되었고. 《경 국대전》에는 한성부·봉상시·군자감 등 25개 관아 49인으로 등재되었다.

^{6) 《}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7월 무술. 문종 이전의 군제 변천은 閱賢九, 《朝 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研究院, 1983), 269~286쪽 참조,

⁷⁾ 오로지 본학인을 지칭하는 뜻으로 제학(기술학)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을 전공하는 자를 의미하였다(《譯註 經國大典》주석편, 정신문화연구원, 1986. 60쪽). 본업인에게 제수한 관직은 호·형조 이외에 司譯院・觀象監・內醫院・ 典醫監・內需司・典涓司・惠民局・活人署 등에 正 이하 100여 직이 있었다.

⁸⁾ 구체적인 시기는 불명하나 세조 12년으로부터 성종 15년까지의 어느 시기로 추측된다.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조선 초기에 중앙의 여러 정치기구의 기능과 국정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는 대개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4년(1404)까지는 도평의사사나 의정부가 6조 등 모든 관아를 통령하면서 국정을 수행하였다. 태종 5년 이후에는 의정부가 6조(6조속아문)를 지휘하거나 6조가 속아문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즉 의정부서사제가 운영된 태종 5∼13년과 세종 18년~단종대에는 왕→의정부→6조→시·감·관·창·고·서 , 6조직계제가 운영된 태종 14년→세종 17년과 세조 원년 이후는 왕→6조→시·감·관·창·고·서의 체계 하에서 국정이 영위되었다.

또 여러 정치기구는 그 직장과 관련하여 태조 즉위로부터 정종대까지는 도평의사사, 의흥삼군부가 각각 최고 의결·집행기관, 최고 군정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발휘하여 국정의 중추기관이 되었다. 태종대 이후에는 의정부·6조가 국정의 중추기관이 되었다.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고,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은 언론을 관장하고, 예문관·춘추관·성균관·승문원은 文翰을 관장하고, 의금부·형조·한성부는 각급 재판을 관장함으로써 국정을 협찬하였다. 내금위·겸사복·선전관·공신嫡長은 궁내에서 직숙하거나 군사관계의傳命에 종사하였다. 중추원·종친부·돈녕부·의빈부·충훈부는 실제 정치에서 발휘한 영향력은 미미하였지만, 문·무재상이 대기하거나 종친·외척·부마·공신이 소속된 정1품 아문이었다.

이러한 정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정치기구를 대상으로 하여 직계아문과 6조 속아문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경국대전》 편찬 이전에 폐지되거나 다른 관아로 계승되었지만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친 도평의사사·문하부·삼군부·집현전을 포괄하여 살펴본다. 각 관아에 대해서는 국정에 끼친 영향력과 관련하여 의정부·6조 등은 그 관아의 연혁, 법제적인 기능과 실제 기능, 구성원의 변천 등까지 살피고, 그 밖의 아문은 관아의 연혁과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장·기능만을 살펴본다.9)

⁹⁾ 車文燮은 〈정치구조〉(《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17~68쪽에서 이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가. 도평의사사

조선의 도평의사사는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정종 32(1400)에 그 강력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권은 의정부로 개칭하여 담당시키고 군사권은 중추원으로 이관할때까지 계속되었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때와 같이 최고의 논의·의결기관이었고, 6조 이하의 백사를 지휘·통솔하면서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등 모든 국정을 관장하였다.10) 도평의사사는 문하부·삼사·중추원 재상이 겸하면서 국정을 논의·의결하고 지휘하는 都評議使司, 속사로서 행정을 담당한 經歷司와 입법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檢詳條例司로 구성되었다.11) 이 중 도평의사사직을 겸대한 관직에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당문학 이상의 문하부 재상, 우복

글과 동일한 논제 아래, (1) 정치구조의 정비에서는 조선 개국 때의 관제를 망라하고 이것이 《經國大典》에 법제화되기까지의 과정을 통괄적으로 서술하였다. (2) 중앙의 정치구조에서는 《經國大典》에 규정된 중앙 정치기구 모두를 1) 의정부, 2) 6조, 3) 3사, 4) 승정원·의금부, 5) 문예기관, 6) 예우기관, 7) 국왕의 시측기관, 8) 6조 속아문으로 구분하고, 《經國大典》의 내용을 통해 그 직장과 관원을 서술하였다. 윤국일은 《경국대전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부록 2 중앙관리종합일람표에서 전 중앙관아와 관직을 기본체제 특수체제·영관지체제·제주체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韓祐劤・閔賢九는《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吏典·兵典(정신문화연구원, 1986)에서 여러 관아의 연혁을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개관하였다.

^{11) 《}太祖實錄》 권1, 태조 원년 7원 을미. 이들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원 · 인원 · 겸대관직 · 직질			
도평의사사		판사 2(시중)	사 1(판중추원사)		
		농판사 11(문화부·삼사 정2	부사 15(중추사 이하 중추학		
		품 이상)	사 이상)		
	경력사	경력 1 6방녹사 각 1	典吏 6(7품거관)		
속	(타관겸)	도사 1	都吏 ?(廩俸其餘權知)		
사	검 상 조 례 사	검상 2(타관 겸)	녹사 3(3관 겸)		

¹⁰⁾ 韓忠熙, 앞의 글, 116~118쪽.

〈丑 1〉

도평의사사 구성원 일람표

기관별		관직·인원·관품	
문하부	좌시중 1(정 1)	시랑찬성사 2(종 1)	지사 1(정2)
	우시중 1(〃)	참찬사 4(정 2)	정당문학 1(〃)
삼 사	판사 1(종 1)	좌·우복야 각 1(정 2)	
중추원	판사 1(정 2)	동지사 4(종 2)	학사 1(종2)
	사 1(종 2)	첨서 1(")	
	지사 2(")	부사 6(")	

야 이상의 삼사 재상, 중추원학사 이상의 중추원 재상 등 당시의 고위 관직자가 모두 망라되었다. 이 구성원은 태조 원년 12월에 商議門下府事(정2, 2), 商議中樞院使(종2, 3)가 추가되고,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정2, 2)·학사(종2, 2)와 개성부의 판사(정2, 2)·윤(종2, 2)이 새로이 구성원이 되면서 4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60~70여 명으로 증가되더니 태조 7년(1398)부터 정종 2년 4월까지의어느 때에 40여 명으로 감축되었다.12)

나. 문하부

門下府는 고려 말의 문하부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원년(1401)에 의정부제의 정비와 함께 그 직장과 관원 중 2품 이상의 그것은 의정부로 흡수되고 낭사는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소멸되었다.

그 관장한 일은 정2품 이상의 재신은 百揆庶務였고, 3품 이하의 낭사는 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教旨・通進啓箋이었다. 관원은 성립 때에는 영부사・각시중・우시중(정1, 각 1), 시랑찬성사(종1, 2), 참찬부사(4)・지부사(1)・정당문학(1)・상의부사(2)(정2), 좌・우산기상시(정3, 각 1), 좌간의대부・우간의대부・직문하(종3, 각 1), 내사사인(정4, 1), 기거주・좌보궐・우보궐(정5, 각 1), 좌・우습유(정6, 각 1), 주서・도사(정7, 각 1)가 있었다.13) 태조 3년(1394)에 시중이

^{12) 《}太祖實錄》권 13, 태조 7년 4월 기묘. 《定宗實錄》권 4. 정종 2년 4월 신축.

^{13)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영부사는 같은 날 좌·우시중의 앞에 판문하부사 洪永通을 제수하였고, 이후에도 판문하부사가 제수된 사례에서 판부사와 통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정승으로 개칭되었다.

그 실제 기능면에서 보면 정 2품관 이상은 개국 초의 정치가 도평의사사(태조 원년~정종 2년)나 의정부(정종 2년 4월 이후)가 백관을 총령하면서 국정을 지휘한 까닭에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3품 이하는 사헌부와 함께 대간으로 통칭되면서 능동적인 기능을 발휘하였다.

다. (의흥)삼군부

고려 말 이래의 삼군총제부를 태조 2년에 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병권을 관장시키면서 성립되었고, 정종 2년에 중추부와 함께 삼군부로 개칭되었다 가 태종 원년에 승추부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14)

그 관장한 일은 중앙의 10위와 각 지방에서 번상하여 시위하는 주군병사의 통할 등 군사 전반에 걸친 통어권을 관장하였다.15) 구성원은 성립될 때에는 중·좌·우군에 각각 절제사(종친·대신, 1·2품?)가 있었다. 태조 3년 이후에 진무소 및 중·좌·우군과 판사(1품)·절제사(2품)·진무(정3 당하~종6)로조정되고, 정종 2년에 중·좌·우군과 판사(종1)·지삼군부사(정2)·총제(종2)로 개편되면서 운영되었다.16)

태조 3년으로부터 7년까지는 좌시중 趙浚과 판삼사사 鄭道傳이 판사를 겸하고 군정을 총관함에 따라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정도전이 태조의 寵信을 토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함에 따라 도평의사사의 군정 간섭을 배제하고 도평의사사와 양립하는 권부가 되었다.

라. 집현전

集賢殿은 세종 2년(1420)에 인재의 양성과 문풍의 진작을 위하여 당·송대

^{14) 《}定宗實錄》 권 4, 정종 2년 4월 신축.

[《]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7월 경자. 그러나 명칭상으로는 소멸되었지만 그 기능상으로 삼군도총제부(태종 3년 6월~9년 8월), 삼군진무소(태종 9년 8월 대종 14년~18년 8월 · 세종 14년 3월~세조 3년 4월), 義建府진무소(태종 18년 8월~세종 즉위년 9월), 삼군부(세종 즉위년 9월~14년 3월), 오위진무소(세조 3년 4월~12년 정월) 및 오위도총부제(세조 12년 정월 이후)의 운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¹⁵⁾ 閔賢九, 앞의 책, 107~109쪽. 의흥삼군부가 성립할 때의 10위는 義興親軍左・右衛, 鷹揚・金吾・左右・神虎・興威・備巡・千牛・監門衛였다.

¹⁶⁾ 閔賢九, 위의 책, 265~266쪽. 판사는 태조 3년 정월부터 확인되었고, 진무소 는 태조 7년에 확인되었다.

의 집현전제와 고려대의 館閣制를 참작하여 궐내의 학문연구 기관을 통합하면서 성립되었고,¹⁷⁾ 세조 2년(1456)에 세조가 사육신사건을 계기로 하여 혁파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관이 관장한 일은 법제적으로는 도서의 수장과 이용, 학문활동,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등 학문적인 기능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세종 초·중기에는 법제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었고, 세종 후기 이후에는 법제적인 기능은 물론 국가시책 논의의 참여, 간쟁과 탄핵 등의 기능도 행사하였다. 관원은 성립될 때에는 겸관인 영전사(정1, 2)·대제학(정2, 2)·제학(종2, 2)과 전임관인 부제학(정3, 1)·직제학(종3, 1)·직전(정4, 1)·응교(종4, 1)·교리(정5, 1)·부교리 (종5, 1)·수찬(정6, 1)·부수찬(종6, 1)·박사(정7, 1)·저작(정8, 1)·정자(정9, 1)가 있었다. 이 관원의 직질은 변동이 없었으나 인원은 몇 차례 변천되면서 운영되었으니, 겸관은 세종 4년에 각 1 명이 감소되면서 폐지될때까지 계승되었다. 전임관은 교리 이하나 직제학 이하가 증감되면서 세종 8년 16인, 세종 17년 초 22인, 세종 17년 7월 32인이 되더니, 세종 18년에 부제학(1)·직제학(1)·직전(2)·응교(2)·교리(2)·부교리(2)·수찬(3)·부수찬(2)·박사(2)·저작(1)·정자(2)의 20인으로 고정되었다.

점관인 제학 이상은 관아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만 부제학 이하를 擬望하고, 부제학 이하가 언론활동상 국왕과 대립하였을 때에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제학 이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연관과 서연관을 例兼하면서¹⁸⁾ 경연과 서연을 전담하였다. 겸관·전임관 모두 일류 학자가 제수되었다. 부제학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차하위자가 차례차례로 승진되었고. 대개 부제학까지 승진한 후에 6조나 승정원 등으로 진출하였다.¹⁹⁾

¹⁷⁾ 명칭상으로는 정종 원년(1399)에 고려의 집현전제를 참작하여 校理(문신 5품이하 겸)와 說書·正字(문신 7품 이하 겸)를 두어 경적을 강론하고 고문에 대비하게 하면서 성립되었고, 다음해에 寶文閣으로 개칭되며 폐지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¹⁸⁾ 그 관원수와 관련되어 세종 2년에는 11인 모두가 경연관을, 세종 17년에는 32 인 중 22인은 경연관에 나머지 10인은 서연관을 겸하였으나, 세종 20년에는 20인 중 10인은 경연관을 겸하고, 10인은 서연관을 겸대하였다.

¹⁹⁾ 崔承熙、〈集賢殿研究(상)・(하)〉(《歴史學報》32・33, 1967・1968) 참조.

집현전이 중심이 된 중국과 우리 나라의 역사, 유교윤리, 의례, 음운 등 분야의 서적편찬은 조선 초기 문치 융성의 토대가 되었다.

(2) 《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가.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가) 의정부

議政府는 정종 2년(1400)에 世弟인 靖安君 芳遠의 주도 하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평의사사를 개편하면서 성립하였다. 성립될 때에는 명칭만 달랐을 뿐 그 기능과 구성원은 도평의사사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태종 5년(1405) 정치만을 관장하고 의정부 관원으로만 구성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의정부제로 정립되었다.

기능은 법제적으로는 정종 2년으로부터 태종 원년까지의 시기에 도평의사사의 최고 국정·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문하부의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는 기능, 周官 3공의 論道經邦·攝理陰陽의 기능이 융합되면서 摠百官·平庶政·理陰陽·經邦國으로 규정되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물론 법제적인 기능이 중심이 되기는 하나 왕권의 강약, 의정부 구성원의 자질, 6조· 승정원·3사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상호관계, 院相制 운영 등의 요소와 관련하여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운영을 총관하였다.20) 그 참여 범위는 정치·

²⁰⁾ 정종 2년부터 대종 5년까지는 의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議政府署事制)과 함께 의정부가 6조를 지배하면서 정치·군사·경제·외교 등 모든 국정을 총 관하였다. 태종 5년부터 태종 14년까지는 의정부서사제가 지속되고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총관하기는 하나 태종의 왕건강화 시도와 관련된 의정부 기능의 약화 도모. 6조의 서정 분장과 함께 이전에 비하여 다소 약화 되었다. 태종 14년부터 세종 18년(1436)까지는 6조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六 曹直啓制)의 실시와 함께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의정 부는 의정이 당시의 최고위 관인이고 국왕의 신임이 깊은 인물들로, 법제적인 사대문서・重囚안핵의 기능 외에 조정이나 국왕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세종 18년부터 단종 3년(1455) 유 6월까지는 의정부서 사제의 부활에 따라 국정운영을 주도하였다. 세조 원년 이후는 6조직계제가 부활되고, 세조의 무단정치와 院相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크 게 약화되었다. 그러면서도 성종 15년(1484) 이후에는 국왕이 대소 정사를 영 돈녕부사 이상 의정과 혐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함에 따라 큰 영향력을 발휘하 였다. 또 세조 13년부터 성종 7년까지도 원상이 정국을 주도하기는 하나 의정 이 원상으로 참여하였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군사 · 경제 · 사회 · 문화 · 외교 등 국정 전분야에 걸쳤다.

관원은 처음 성립될 때에는 문하부·삼사의 1·2품관과 도평의사사의 속사였던 경력사·검상조례사관으로 구성되었으니, 종래의 도평의사사 직제에서 중추원의 2품관만이 제외된 것이었다. 곧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정2, 1)·학사(종2, 2)와 삼군부의 중·좌·우군총제(종2, 각 2)가 추가되어 도평의사사때의 직제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태종의 즉위와 함께 의정부의 기능·관원을 축소시키고, 6조의 기능·지위를 강화함에 따라 시정되었다. 관원은 태종 원년에 삼사·예문춘추관·삼군부 재상을 의정부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문하부적인 관직명을 의정부적인 것으로 개칭함에 따라 영의정부사·좌의정·우의정(정1, 각 1), 의정부찬성사(종1, 2), 의정부참찬사(4), 의정부문학(1), 참지의정부사(2)(정2), 의정부사인(정4, 2), 검상조례사의 검상·녹사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의정부제는 도평의사사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후 세조 12년(1466)까지 영·좌·우의정(정1, 각 1), 좌·우찬성(종1, 각 1), 좌·우참찬(정2, 각 1), 사인(정4, 2), 검상(정5, 1), 사록(정7, 2)으로 정립되었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1)

의정부의 정사는 구성원의 직질·기능과 관련하여 대개 3의정이 찬성 이하의 보좌를 받아 합의로써 처리되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국왕의 총신을 받는 한 두 의정이 의정부의 업무를 천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관원에는 대개 타관아의 동품자나 의정부의 차하위자가 체직되거나 승직되면서 제수되었다. 특히 사인에는 검상이 재직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陞資되면서 제수되고 검상에는 동품의 3사·6조 관원이 제수되었으며, 사인·검상·사록은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승자하여 체직되는²²⁾ 등 같은 품계의 어떠한 관직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나) 6조(이·호·예·병·형·공조)

6조는 고려 말의 6조를 계승하여 정3품 아문으로 성립되었다. 태종 5년에

²¹⁾ 韓忠熙, 앞의 글.

²²⁾ 韓忠熙、〈朝鮮初期 議政府舍人・檢詳의 官人的 地位-舍人・檢詳의 歴官과 ユ機能의 分析을 중심으로-〉(《歷史教育論集》13・14, 慶北大, 1990) 참조.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서정을 분장하고 장관인 판서가 朝政에 참여하게 되더니, 속사·속아문제의 정립과 함께 국정 수행의 중심 관아가 되었다.

처음 6조가 관장한 일은 각각 銓選流品·考功·殿最 등의 일(이조), 武選·兵籍·郵驛 등의 일(병조), 土地·戶口·財用 등의 일(호조), 水火·奸盜·鬪殺·詞訟 등의 일(형조), 祭享·賓客·朝會·科擧·道釋·進獻 등의 일(예조), 工匠·造作 등의 일(광조)이었다. 관원은 각 조에 전서(정3, 2), 의랑(정4, 2), 정랑(정5, 2), 좌랑(정6, 2), 주사(정7, 2)의 품관과 영사(6·7 품거관)의 아전이 있었다. 이 직장과 구성원이 세조대까지 왕권, 의정부·6조 기능, 제도정비 등과 관련되어 여러 번 수정·보완되었고,²³⁾ 마지막《경국대전》의 편찬과함께 아래에서 언급되는 직장·관원, 속사·속아문제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5년까지는 육조의 서무 분장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또 상서사가 문·무반의 銓選을 관장하고, 의흥삼군부가 병권을 관장하며, 三司(司平府)가 재정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병·호조는 각각 그 분야의 정사를 관장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하였다.

(가) 이 조

文選・勳封・考課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원에는 판서(정2, 1), 참판(종2, 1), 참의(정3 당상, 1), 정량(정5, 3), 좌량(정6, 3)이 있었다. 속사에는 종친・문관・잡직・승직의 임명, 고신・녹패・문과・생원・진사시 합격자에 대한 賜牌・差定・取才・개명, 贓汚・敗常人의 錄案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文選司, 宗宰・공신의 封贈, 시호・享官・老職・命婦의 爵帖・鄕吏給帖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考勳司, 문관의 공과・勤慢・휴가・여러 관사의 아전의 근무 일수・향리 자손 등을 분별 처리하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考功司가 있었다. 각 조에 소속된 정량・좌량 중 1명씩이 속사에 편제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속아문에는 충익부・상서원・종부시・사용원・내수사・내시부・액정서가 있었다.

각 조의 정량·좌랑은 그 조의 직장과 담당하는 일에서 재직기간이 차면 승자되어 체직되었고, 좌랑은 정랑에 결원이 있으면 대개 재직기간에 구애되

²³⁾ 韓忠熙, 〈朝鮮初期 六曹硏究〉(《大丘史學》20·21, 1981), 184~201쪽.

지 않고 승직되는 등 당시의 관인이 선망하는 관직의 하나였다.²⁴⁾ 그 밖에 《경국대전》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태종 5년 정월 이후에는 수시로 판서의 상위에 의정 등으로 겸대된 判事制가 운영되면서 인사 등 일부의 중요한 정사를 지휘하였다.²⁵⁾

(나) 호 조

호구・貢職・錢糧・食貨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 算學教授(종6, 1), 別提(종6, 2), 算士(종7, 1), 計士(종8, 2), 訓導(정9, 1), 會士(종9, 2)가 있었다. 교수 이하는 本業人이었고, 별제는 無祿官이었으며, 산사 이하는 동반 遞兒職이었다.26) 속사에는 호구・토전・조세・부역・공헌・농상의 권장, 풍흉의 조사, 賑貸穀의 분급과 회수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版籍司, 서울과 지방에서의 儲積・歲計・解由・虧缺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會計司, 서울에 있는 각 관사의 支調, 왜인의 糧料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經費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내자시・내심시・사도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풍저창・광흥창・전함사・평시서・사은서・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5부가 있었다.

(다) 예 조

예악·제사 宴享·朝聘·학교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이 있었다. 속사에는 의식·제도·조회·경연· 史官·학교·과거·印信·表箋·冊命·천문·漏刻·國忌·墓諱·喪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稽制司, 宴享·제사·牲豆·飮膳·의약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典享司, 사신·왜인·야인의 영접, 외방의 조공과 이에 대한

²⁴⁾ 韓忠熙,〈朝鮮初期 正郎·佐郎의 官人的 地位〉(《韓國學論集》17, 啓明大, 1990), 153~161等.

²⁵⁾ 韓忠熙、〈朝鮮初期 判吏・兵曹事研究〉(《韓國學論集》11, 1985), 120~131쪽. 호・예・병조에 운영된 판사도 같다.

²⁶⁾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1), 128·131쪽. 이하 형조·사옹원· 수성금화사·예빈시·전설사·전연사·전함사·교서관·상의원·군기시·내 수사·빙고·귀후서·조지서·활인서·장원서·사포서·와서·소격서·사축 서·도화서에 소속된 무록관, 형조·내의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내수사· 혜민서·전연사·활인서에 소속된 체아직에 대한 설명은 뒤 2-1)-(2)-나 무록직 과 체아직(110~114쪽)에 대한 서술과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였다.

宴設과 賜與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典客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홍문 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소격서·종묘서·사 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 및 여러殿·陵 등이 있었다.

(라) 병 조

무선·군무·儀衛·우역·兵甲·器仗·門戶·管鑰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참지(정3 당상, 1), 정랑(정5, 4), 좌랑(정6, 4)이 있었다. 속사에는 무관·군사·잡직의 임명과 고신·녹패·附過·給假, 무과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武選司, 鹵簿·興辇·廐牧·程驛·보충대·조예·나장·伴倘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乘興司, 군적·마적·병기·전함·군사의 점호·사열·무예의 훈련·숙위, 巡綽·城堡・鎭戍와 備禦·征討, 군관·군인의 파견과 군역의 교대, 給保·給假·侍丁·復戶·화포·봉수·改火·禁火·符信·更籤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武備司가 있었다.27)속아문에는 5위·훈련원·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가 있었다.

아울러 병조는 군정기능과 관련하여 군령권도 행사하였다. 즉, 군정을 전 장한 때와 삼군진무소나 오위진무소와 군령기능을 공유한 시기는 물론 군령 기능이 삼군진무소나 의흥부 또는 오위도총부에 귀속된 시기에 있어서도²⁸⁾

²⁷⁾ 병조 속사의 사무분장은 이·호·예·형·공조와는 달리 정랑·좌랑이 각 4 인이나 속사는 3사였음에서 그 분장이 애매하였다. 그러나 그 직사를 검토할 때 무선·승여사에는 정랑·좌랑 각 1인이, 무비사에는 정랑·좌랑 각 2인이 소속되어 담당사를 처리하였다고 추측된다. 즉, 무비사에 소속된 정랑·좌랑 은 무비사의 직장을 「숙위사」와「군적마적병기전함점열군사훈련무예등사」의 둘로 나누어 각각 정랑·좌랑 1인이 분장한 것으로 생각된다(韓忠熙,《朝鮮初 期 六曹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2, 66~67쪽).

²⁸⁾ 태종 4년(1404)까지는 군령기능과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태종 5년~9년에는 군기를 관장한 승추부가 병조에 합속되고 군령을 관장한 삼군도총제부가 병조 속아문이 됨에 따라 군정·군령을 관장하는 단일기관이 되었다. 태종 9년~12년에는 병조에 의한 군정·군령총관의 독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군진무소나 삼군진무소를 개칭한 의흥부에 군령기능이 이관되면서 군정기능만을 관장하였다. 태종 12년~14년에는 의흥부의 혁파와 함께 다시 일원적인 군정·군령기관이 되었다. 태종 14년~세조 12년(1466)에는 복설된 삼군진무소, 삼군진무소를 개칭한 오위진무소(세조 3년)와 공동으로 군령기능을 관

① 당시는 문반 중심의 정치가 수행되었다. ② 삼군도진무·오위도총관은 정 2품관의 겸직이었다. ③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면서 국왕의 측근에서 군령의 전이과정에 깊숙이 간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 을 관장하는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마) 형 조

법률, 詳讞, 詞訟,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4), 좌랑(4), 율학교수(종6, 1), 별제(종6, 2), 명률(종7, 1), 심률(종8, 2), 훈도(정9, 1), 검률(종9, 2)이 있었다. 교수 이하는 본업인이었다. 속사에는 死罪를 상세히 覆審하는 사무를 맡아보던 詳覆司, 율령과 按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孝律司, 형옥과 금령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掌禁司, 노예의 장적과 포로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掌隸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장례원과 전옥서가 있었다.

(바) 공 조

山澤・工匠・營繕・陶冶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다. 판서(1), 참판(1), 참의(1), 정랑(3), 좌랑(3)이 있었다. 또 잡직의 工造(종8, 1)・工作(종9, 2)이 있었다. 29) 속사에는 궁실・城池・公廨・屋宇・토목・工役・피혁・氈罽 등에 관한사무를 맡아보던 營造司, 여러 공장의 제작, 금・은・주・옥과 동・납・철의冶鑄・陶瓦・權衡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攻治司, 山澤・津梁・苑囿・種植・탄・목재와 석재・舟車・필묵・수철・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山澤司가 있었다. 속아문에는 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전연사・장원서・조지서・와서가 있었다.

다) 승정원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이 의총삼군부와 承政院으로 나누어질 때 중추원의 知申事와 좌・우・좌부・우부승지 및 당후관이 승정원관으로 독립하면서

장하였다. 세조 12년 이후는 오위진무소를 개칭하면서 등장한 오위도총부가 군령을 전장하는 기관이 되고, 이것이《經國大典》에 규정되면서 병조는 군정 기관으로 고정 되었다.

²⁹⁾ 이하 교서관·사섬서·조지서·사옹원·상의원·사복시·군기시·선공감·장 악원·소격서·장원서·액정서와 오위의 破陣軍·隊卒·彭排에 소속된 잡직에 대한 설명은 뒤 2-1)-(1)-다 잡직(107~108쪽)과의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였다.

성립되었다.30) 태종 원년(1401)에 의흥삼군부와 승정원이 승추부로 합쳐짐에 따라 한때 승추부에 합속되었다. 태종 5년에 승추부가 병조에 병합됨에 따라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되고. 종래의 지신사와 승지에서 代言으로 개칭된 좌ㆍ 우・좌부・우부대언 외에 동부대언이 새로이 두어지고 당후관이 注書로 개 칭되었다. 세종 15년(1433)에 지신사가 도승지로 개칭되고 대언도 승지로 고 쳐지면서 정립되었다.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관원에는 도ㆍ좌ㆍ 우・좌부・우부・동부승지(정3 당상, 각 1)와 주서(정7, 2)가 있었다.

승정원은 정3품 아문이지만 그 직장상 의정부・6조와 함께 국정의 중심기 관이 되었다. 6승지도 정3품 당상관에 불과하나 재상으로 인식되면서 때로는 문·무반의 인사 등 국정 전반에 큰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도승지는 의 정ㆍ이판 등과 인사권을 두고 각축을 하는가 하면, 좌승지 이하를 지휘하면 서 승정원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위세를 발휘하였다. 승지는 대개 종2품 이상에 승자하여 체직되었고. 주서는 재직기간이 차면 승자하여 체직되는 우 대를 받았다.31)

라) 사헌부·사간원

(가) 사헌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憲府를 계승하여 論執時政得失・矯正風 俗・考察功過・褒擧彈劾의 직무를 맡고, 대사헌(종2, 1), 중승・겸중승(종3, 각 1). 시사(정4. 2). 잡단(정5. 2). 감찰(정6. 20)의 관원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원년에 중승·겸중승이 집의(1)로, 시사가 장령으로, 잡단이 지평(1)으로 각각 개칭·갂워되고, 감찰이 21인으로 증가되었다. 세조 12년(1466)에 감찰이 19 인으로 감소되었고,《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지평 1인과 감찰 5인이 증원 되면서 법제화되었다. 그때그때의 정사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 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濫僞를 금하 는 일을 관장하였다. 대사헌(종2. 1), 집의(종3. 1), 장령(정4. 2), 지평 (정5. 2), 감찰(정6, 24)이 있었다.

³⁰⁾ 기능상으로는 고려 말의 중추원제를 계승하여 지신사와 좌우·좌부·우부승 지가 왕명출납을 관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³¹⁾ 韓忠熙、〈朝鮮初期 承政院研究〉(《韓國史研究》59, 1987) 참고.

실제 기능은 법제적인 간쟁·봉박·서경은 물론, 일반적인 참정·侍臣·형정 등의 기능을 광범하게 발휘하였다. 특히 사간원과 함께 행사한 서경권은 인사권을 둘러싼 국왕과의 마찰에서 처음에는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그 대상이 4~5품 이하, 1품 이하, 폐지 등으로 변개되다가 마지막《경국대전》에 5품 이하로 법제화되었다.32》 사헌부는 그기능에서 사간원·홍문관(성종 9년 이후, 세종 2년~세조 2년에는 집현전)과 함께 3사로 호칭되고, 형조·한성부와 함께 3법사로 통칭되었다. 관원은 청렴강개한 인물 중에서 엄선되었다. 관원 중 지평 이상은 臺長으로 호칭되면서 언론활동을 행하였다. 그러나 감찰은 다만 조회 때에 백관의 의례를 검찰하고 중앙의 여러 관서와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의 잘못을 감찰하였다. 감찰 1원은 房主監察로 임명되어 여러 감찰을 통솔하였다.33》

(나) 사간원

태종 원년(1401) 의정부에 소속된 문하부를 혁파할 때 문하부에 소속되어 獻納諫靜·駁正差除·通進啓箋의 기능을 수행하던 좌·우산기상시(정3, 각 1) 이하의 낭사를 司諫院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34) 사간원은 성립할 때에 이미 태종의 왕권강화책과 관련되어 그 직장과 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통진계전이 승정원으로 이관되면서 헌납간쟁·박정차제로 조정되었다. 좌·우산기상시, 내사사인, 기거주가 혁거되고, 좌·우간의 대부가 정3품 당상계의 좌·우사간으로 승질·개칭되고, 직무하가 지사간원사로, 좌·우보궐

대조 원년 7월~10월; 1~9품 대조 원년 10월~정종 2년 정월; 4~9품(그 외는 관 교, 이하 동) 정종 2년 정월~대종 3년 2월 이전; 1~9품 대종 3년 2월~대종 13년 4월 ; 4~9품 대종 13년 4월~10월; 1~9품 대종 13년 10월~세종 8년 2월;5~9품 세종 8년 2월~9월; 1~9품 세종 8년 9월~세조 12년 7월;5~9품 세조 12년 7월~성종 원년 3월;서경 폐지 성종 원년 3월 이후; 5~9품

³²⁾ 崔承照,《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76), 52~59쪽. 조선 초 대간의 서경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³³⁾ 崔承熙. 위의 책.

³⁴⁾ 기능상으로는 고려 공민왕대 문하부 낭사의 직장과 관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좌·우현납으로, 좌·우습유가 좌·우정언으로 각각 개칭되어, 7관직 11 인이 4관직 7인으로 되었다. 관장한 일은 세조 12년(1466)까지 諫諍封駁으로 개정되었다. 관원은 세조 6년에 좌·우사간대부가 사간대부(1)로 좌·우정언이 정언(1)으로 통합 및 감원되고 좌·우헌납은 혁거되었다. 세조 12년에 사간대부는 대사간으로 지사간원사는 사간으로 각각 개칭되고 헌납(1)이 다시설치되었다. 성종 원년(1470)에 정언이 2인으로 증원되었다. 왕에게 간쟁 및 논박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대사간(정3품 당상, 1), 사간(종3, 1), 헌납(정5, 1), 정언(정6, 2)의 관원이 있었다.

실제 기능이 법제적인 간쟁·봉박·서경은 물론, 사헌부의 분장 직무인 백관규찰과 일반적인 참정·시신기능 등을 광범히 행하였다. 관원은 그 직무분장상 가계가 좋고 재주와 식견이 있으면서도 강개한 문관으로 제수되었다. 사헌부관과 함께 대간으로 불리면서도 사헌부 관원이 부내에서 근무할 때에상하관의 위계와 질서가 엄격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관계가 자유로웠고, 직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분방하였다.35)

나. 중추부 · 오위도총부 · 의금부

가) 중추부

세조 12년에 중추원을 중추부로 개칭하고 관원은 중추원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나, 관장한 일은 병조에 이관하여 하는 일이 없는 무임소의 문·무 당상관이 대기하는 관아로 개편되면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명칭·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중추원(조선개국~정종 2년, 세종 14년~세조 12년)에서36) 비롯되었다. 관장하는 일은 없었으나 소임이 없는 문·무의 당상관을

³⁵⁾ 崔承熙. 앞의 책 참조.

³⁶⁾ 개국 초에는 啓覆出納 및 兵器・軍政・宿衛・警備・差攝 등의 일을 관장하였고, 판사(정2,1), 사(1)・지사(2)・동지사(4)・첨서사(1)・부사(6)・학사(1)・상 의원사(3)(이상 종2), 도・좌・우・좌부・우부승지(정3, 각 1), 당후관(정7, 2)의 관원이 있었다. 이후 태조 2년에 의흥삼군부가 만들어져 강력한 군사적 권한을 장악하자 그 기능과 관아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정종 2년에 의흥삼군부와 합하여 삼군부로 개칭되면서 일단 소멸하였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태종원년에 삼군부가 개칭된 승추부로 계승되었고, 태종 5년에 다시 승추부를 병합한 병조로 계승되었다. 세종 14년(1432)에 이르러 삼군부를 중추원으로 개칭하면서 숙위와 경비 등의 일을 맡게 하고, 판중추원사(종1, 3), 원사・지원

소속시켜 조정에 참여시키고 녹봉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영사(정1, 1), 판사(종1, 2), 지사(정2, 6), 동지사(종2, 7), 첨지사(정3 당상, 8), 경력(종4, 1), 도사(종5, 1)가 있었다.

그 직무 분장과는 달리 첨지중추부사 이상에 제수된 인물은 관품상 각각 의정, 찬성, 참찬·판서, 참판·관찰사·병마절도사, 참의·승지 등과 교체되고,37) 대소 정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그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와 함께 가장 높은 관아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나) 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는 세조 12년에 오위진무소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태조 2년 이래로 독자적으로 군령을 관장한 의흥삼군부(삼군부)·삼군진무소·의흥부, 병조와 함께 군령을 관장한 삼군진무소·오위진무소에서38) 비롯되었다. 성립 때 오위도총부의 직장과 관원은《經國大典》의 그것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5위(의흥·용양·호분·충좌·충무위)의 군무를 관장하여 다스렸다. 도총관(정2점, 부총관과 합해 10인)을 비롯하여 부총관(종2점), 경력(종4, 4), 도사(종5, 4)가 있었다.

오위도총부의 5위에 대한 군령기능은 법제적으로는 전장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의 군정기능과 5위가 병조의 속아문이라는 점 등에서 병조와 횡적으로 협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영향 아래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39) 그러면서도 도총관·부총관은 그 직무 분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1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규정되었고, 국왕의 신임을 받는 경관으로 임명되었다. 당하관은 東才가 있으면서도 일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를 임용

사(정2, 각 3), 동지원사(6)·부사(8)(종2), 첨지중추원사(정3 당상, 6)(이상 녹 관), 경력(정4, 1)·도사(정5, 1)(이상 겸관)를 두면서 복립되었다. 세종 18년에 영중추원사(정1, 1)가 새로 두어졌다.

³⁷⁾ 韓忠熙,〈朝鮮初期 六曹硏究 添補〉(《大丘史學》33, 1987), 10~16零.

^{----,} 앞의 글(1987a), 39∼43쪽.

³⁸⁾ 이들의 운영기간은 주 14) 참조.

³⁹⁾ 閔賢九, 앞의 책, 286~288쪽. 병조는 5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렸던 만큼 행정상의 감독권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5위관의 인사문제 등 5위에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모든 移命의 과정에 개재할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추요의 위치에서 오위도총부를 압도하는 경향이 컸다.

하였다.

다) 의금부

義禁府는 태종 14년(1414)에 義勇巡禁司와 의용순금사 때의 당상관(口傳)과상호군 이하를 도제주(1)·제주(3)와 전무(정3, 2)·부진무(종3, 2)·지사(정4, 2)·도사(5~6품, 4)로 각각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40)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巡軍萬戶府(태조 원년~태종 2년), 巡衛府(태종 2년~태종 3년), 의용순금사(태종 3년~14년)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세조 12년(1466)전 후에도제주는 혁거되고, 제주와 진무 이하는 판사·지사·동지사와 경력·도사로 개편하면서 정립되었다.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판사(종1겸, 지사·동지사와 합해 4인), 지사(정2겸), 동지사(종2겸), 경력(종4, 도사와 합해 10인), 도사(종5)가 있었다. 도제주·제주나 판사·지사·동지사는 왕권에 밀착하여 신권을 탄압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지녔으므로 국왕의 신임이 깊은 인물이 제수되었다.

다. 한성부 · 개성부

가) 한성부

태조 4년(1394) 전년의 개성에서 한양으로의 천도에 이어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기의 과전과 관내의 토지·호구·농상·학교·사송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판사(정2, 1), 좌·우윤(종2, 각 1), 서윤(종 4, 1), 판관(종5, 1), 주부(종6, 2), 참군(정7, 1)을 두었다. 41) 태조 5년에 관내 5부의 조직을 갖추었다. 정종 원년(1399) 개성부로 천도함에 따라 다소 비중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태종 5년(1405) 환도와 함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세종대에 왕도의 치안관장, 42) 형조의 형결 외에 相鬪와 禁賭博·禁火・禁良賤相婚・死人檢屍.43) 사헌부의 年長未嫁女成婚・過限不葬・各司虧

⁴⁰⁾ 李相寔, 〈義禁府考〉(《歷史學研究》6, 全南大, 1975), 48~58\.

⁴¹⁾ 元永煥, 〈漢城府研究(1)-行政制度와 管割區域을 中心으로-〉(《鄉土서울》39, 1981), 91쪽.

^{42)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 9월 계축.

^{43) 《}世宗實錄》권 32, 세종 8년 4월 병자. 《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9월 정유.

缺米豆及雜物追徵·京中還上追徵 등이44) 각각 이관되었다.《경국대전》에는 경도의 인구·장적·시전·가사·전토·4산·도로·교량·溝渠·逋敏·負債・鬪毆·주간순찰·검시·차량·故失牛馬의 烙契 등에 관한 일을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윤(정2, 1), 좌·우윤(종2, 각 1), 서윤(종4, 1), 판관(종5, 2), 참군(정7, 3, 1인은 통례원 인의겸)이 있었고, 판관 이상 중 1인은 久任官으로 하였다.

한성부의 업무는 거주민이 전국 각 지역과 관련되고, 그 하는 일이 6조 업무와 상호 연관되었기 때문에 일부 일은 전국이 포괄되고 6조와 관련 아래 수행되었다. 45) 판윤, 좌·우윤은 경관이고 2품인 직질에서 常參 등 대소조정에 참여하여 맡은 일과 그 밖의 정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나) 개성부

고려 말의 개성부를 계승하여 경기의 토지·호구·농상·학교·사송 등의일을 맡고, 판사(정2, 2), 윤(종2, 2), 소윤(정4, 2), 판관(정5, 2), 참군(정7, 2)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태조 4년에 한성부가 국도로 정립됨과 관련하여 그 명칭과 관원이 개성유후사와 유후·부유후 등으로 격하되고, 그에 따라 직장도축소되었다. 이후 예종 원년(1469)까지 수차에 걸쳐 읍호와 장·차관의 직질이 승강되고, 경기도에 예속되거나 독립아문이 되는 변개를 거치면서 경관의종2품 아문인 개성부로 정립되었다.46) 개성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44) 《}世宗實錄》권 37. 세종 9년 9월 정유.

⁴⁵⁾ 전택・산・노비 등 소송 업무와 검시는 부내와 전국이 망라되었다. 호적도 관내의 호적을 작성하고 관리함은 물론, 각도・각읍에서 작성한 호적을 종합・정리하여 중앙에 올린 2부를 호조와 나누어 보관하였다. 또 호적은 호조와, 옥송은 형조・의금부와, 坐更・포도・순찰사는 병조와, 과년한 남녀의 혼인사는 호조와, 禁火는 병조・의금부・형조・수성금화사와, 검시는 병조・형조와, 도로・구거・교량의 수리는 공조와 각각 협의하면서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⁴⁶⁾ 李存熙, 〈朝鮮時代 留守府經營〉(《韓國史硏究》47, 1984) 참조. 세종 8년(1426) 舊都라 하여 漢城府 城底十里例에 따라 인접 현을 유후사에 예속시켰고, 세종 12년에는 당·송제에 따라 개성부로 승격시켰다. 다시 세종 20년 개성유수부가 되고 세조 12년 개성부가 되더니, 예종 원년에 개성유수부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다. 또 장관의 명칭과 직질도 세종 20년 개성유후사 유후(정2)에서 개성부 유수(정2)로 개정되었고, 세종 24년에 정 2품인 판한성부와의 직질이

유수(종2, 2인 중 1인은 경기관찰사겸), 경력(종4, 1), 도사(종5, 1), 교수(종6, 1), 분 교관(종9. 1). 검률(종9. 1)이 있었다. 개성부는 경관이고 직계아문이기는 하나. 한성부와는 달리 외관적 경향이 있었다.

라. 종친부 • 돈녕부 • 충훈부 • 의빈부

가) 종친부

宗親府는 세종 12년(1430)에 在內諸君府를 개칭하고, 종실 제군을 소속시키 면서 성립된 종실제군의 관부였다. 관원은 典籤‧典簿를 제외하고는 관계별 로 관직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인원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대군(무품, 왕의 적 자) • 군(무품, 왕의 서자), 군(정1), 군(종1, 대군을 승습할 적장자), 군(정2, 왕세자 의 중자, 대군을 승습할 적장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자), 군(종2, 왕세자의 중손, 대 군을 승습할 적장증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손), 도정(정3 당상, 종친), 정(정3 당하, 왕세자의 중증손, 왕자군의 중자, 왕자군을 승습할 적장증손), 부정(종3, 대군의 중중 손, 왕자군의 중손), 수(정4, 왕자군의 중증손), 전첨(정4, 1인 조관), 부수(종4, 종친), 영(정5, 종친), 전부(정5, 1인 조관), 부령(종5, 종친), 감(정6, 종친)이 있었다.

종친은 고려와 같이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 구축을 염려하여 작록은 후하게 주되 관직 제수는 억제하였다. 그러나 태조대에는 개국 초의 인심 동 요와 혼란에 대비할 필요에서 사병을 허락하고 병권을 위임함은 물론 조관 과 구별없이 제수하였다. 세조대에도 세조의 왕권강화를 위한 종친중용책에 따라 대거 정치ㆍ군사의 요직에 제수하였다.47) 그러다가 성종 5년(1474)에 개 찬한《경국대전》반포를 전후하여 仕宦이 금지되었고. 봉군된 왕자로부터 4 대가 지난(盡親) 후에야 문무반직에 제수되었다. 그 결과 종친부는 의정부보 다 서열이 높은 아문이었으나 실무가 없는 관아가 되었다. 1품의 종친이 有 司掌上이 되어 종친의 청죄 등에 관한 일을 상계하여 집행하였다.

나) 돈녕부

논란되면서 종2품으로 강질되었다. 세조 12년에 鎭管體制의 실시와 관련되어 부윤으로 다시 강격되면서 경기도 관찰사에 예속되기도 하나, 예종 원년에 유 수부로 승격되면서 독립관아가 되었다.

⁴⁷⁾ 金成俊,〈宗親府考〉(《史學研究》18, 1964), 11~39\.

敦寧府는 태종 2년(1412) 이래로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추요직의 제수와 봉군 대상에서 제외된 왕의 친족, 왕비·세자빈의 친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태종 14년에 실제 담당하는 직무상의 일이 없는 관부를 두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친족과 외척의 관부이다. 영사(정1, 1), 판사(종1, 1), 지사(정2, 1), 동지사(종2, 1), 도정(정3 당상, 1), 정(정3, 1), 부정(종3, 1), 첨정(종4, 2), 판관(종5, 2), 주부(종6, 2), 직장(종7, 2), 봉사(종8, 2), 참봉(종9, 2)이 있었다. 이 관직에는 宗姓은 왕과 선왕의 9촌, 異姓은 6촌 이내의 친척, 왕비와 선왕비의 동성은 8촌, 이성은 5촌 이내의 친척, 세자빈의 동성은 6촌, 이성은 3촌 이내의 친척, 위에서 든 모든 촌수 내의 고모·자매·질녀·손녀의 배우자 중에서 제수하였다.

다) 충훈부

세종 16년 이래의 충훈사를 단종 2년(1454)에 忠勳府라 개칭하고 정 1품 아문으로 승격시키면서 성립된48) 여러 공신의49) 관부이다. 부원군(정1, 무정수), 군(정1~종2, 무정수), 경력(종4, 1), 도사(종5, 1)가 있었다. 親功臣이나 공신을 이어받은 인물이 종2품 이상의 관계에 오르면 군에 책봉되었고, 친공신으로서 정1품의 관계에 오른 자와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에 책봉되었다. 1품의 공신이 유사당상을 경대하고 공신의 청죄 등에 관한 일을 상계하여 집행하였다.

라) 의빈부

세종 26년 이래의 부마부를 세조 12년(1466)에 儀賓府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50) 공주·옹주에게 장가든 자의 관부이다. 위(정1~종2, 무정수, 의빈), 부위(정3 당상, 무정수, 의빈), 첨위(정3 당하~종3, 무정수, 의빈), 경력(종4, 1),

^{48) 《}端宗實錄》권 10, 단종 2년 2월 임인. 기능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개국 공신도감(태조 원년 8월~태종 17년), 공신도감(태종 17년 정월~세종 17년)에서 비롯되었다.

⁴⁹⁾ 태조 원년부터 성종 2년까지에 걸쳐 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 翊戴・佐理功臣의 책록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鄭杜熙,《朝鮮初期 政治支配 勢力研究》(一潮閣, 1983) 참조.

⁵⁰⁾ 기능·직제상으로는 개국 초 이래의 이성제군소(?~태종 17년), 공신제군부 (태종 17년 2월~세종 즉위), 이성제군부(세종 즉위년 9월~26년)에서 비롯되었다.

도사(종5, 1)가 있었다. 의빈은 《경국대전》에 따라 실제의 정치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마. 경 연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經筵制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2년부터 집현전의 부제학 이하가 참찬관 이하를 겸대하였다. 세조 2년에 집현전의 학과와 함께 정지되고, 세조 6년 그 관직마저 혁과되었다가 예종 즉위 (1468)와 함께 복구되었다. 성종 9년(1478)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가 참찬관 이하를 겸대하면서 정립되었다.51) 왕에게 역사를 강독하고 論評・思慮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겸, 3, 의정), 지사(정2겸, 3), 동지사(종2 겸, 3), 참찬관(정3당상겸, 7, 6승지와 홍문관 부제학), 시강관(정4겸, 4, 홍문관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 시독관(정5겸, 4, 홍문관 교리·부교리), 검토관(정6겸, 4, 홍문관 수찬·부수찬), 사경(정7겸, 1, 홍문관 박사), 설경(정8겸, 1, 홍문관 저작), 전경(정9겸, 2, 홍문관 정자)이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 겸직이나, 영사·참찬관은 그 겸대관 직상 문관이 아니라도 겸하였다.

성종 16년~25년에는 경연직을 겸대하지 아니한 종2품 이상의 문·무관을 특진관에 제수하여 교대로 경연에 참석케 하였다. 이 제도는 경연이 끝난 후 에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는 정치운영과 함께 경연의 정치기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다.52)

바. 겸사복・내금위

가) 겸사복

兼司僕은 태종 9년(1407)에 고려의 尚乘承旨를 계승한 내사복시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고, 세조 10년(1464)에 내금위와 같은 친위병이 되면서 정립되었다.53) 궐내에 입직시위하였고, 장(종2겸, 3), 정3품 당하관(1), 종3품(2), 종4

⁵¹⁾ 南智大、〈朝鮮初期의 經筵制度〉(《韓國史論》6, 서울大, 1980). 124~139쪽.

⁵²⁾ 權延雄,〈朝鮮 成宗朝의 經筵〉(《韓國文化의 諸問題》,國際文化財團, 1982), 78~87等.

⁵³⁾ 南都泳、〈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156~ 168쪽.

품(5), 종5품(6), 종6품(9), 종7품(6), 종8품(9), 종9품(14)이 있었다. 정3품 이하는 서반 체아직이었다.

나) 내금위

內禁衛는 태종 7년에 內上直의 개편으로 성립하였고, 세종 6년에 태종 9년 이래의 내시위를 병합하면서 정립되었다.54) 궐내에 입직시위하였고, 장(종2점, 3), 정3품 당하관(1), 종3품(4), 종4품(7), 종5품(18), 종6품(28), 종7품(49), 종8품(39), 종9품(44)이 있었다. 정3품 이하는 모두 체아직이었다. 그러나 그 기능 및 무예와 관련하여 국왕의 총애를 받았고, 집현전관에 비교되는가 하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첨절제사·만호·변방수령에 제수되는 우대를 받았다.55)

(3) 《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가. 이조 속아문

가) 상서워 종부시·사옹워·내수사·충익부

(가) 상서워

尚瑞院은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된 상서사를56) 세조 12년(1466) 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璽寶・符牌・節鉞을 관장하였다. 정(정3 당하, 1, 도승지겸), 판관(종5, 1), 직장(종7, 1), 부직장(정8, 2)이 있었다.

(나) 종부시

宗簿寺는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된 전중시가 태종 원년(1401)에

⁵⁴⁾ 車文燮,〈鮮初의 內禁衛〉(《史學研究》18, 1964;〈朝鮮時代 軍制研究》, 檀國大 出版部, 1973), 52~56\.

^{55) 《}成宗實錄》권 7, 성종 정년 5일 계묘. 《經國大典》권 4, 兵典 外官職 軍官.

⁵⁶⁾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5년까지는 판사(1품, 4)·윤(종3, 1)·소윤(정4, 1)· 승(정5, 2)·주부(정6, 2)·직장(정7, 2)·녹사(정8, 2)가 있어 符印과 除拜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 때는 고려의 제도를 승습하여 전주권을 관장하였는데, 판사는 좌·우정승 등이 겸하면서 문·무반의 인사를 천단하였다(《定宗實錄》권 6, 정종 2년 12월), 태종 5년에는 그 기능이, 문·무반의 인사권은 이·병조로 귀속되면서 새보와 부신을 관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관원도 판사가 혁거되면서 윤 이하로 감축되었다.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14년 재내제군부에 합속되면서 폐지되었다가 세종 12년(1430)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될 때에 다시 독립하면서 정립되었다. 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도제주(정1점)·제주(종1~종2점) 각 2원, 정(정3, 1), 첨정(종4, 1), 주부(종6, 1), 직장(종7, 1)이 있었다. 도제주에는 존속 종친이 제수되었다.

(다) 사옹원

司饗院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옹방을 세조 13년에 개칭하여 녹관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식사와 궐내 음식물의 공급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도제주(1), 제주(4), 부제주(정3 당상겸, 5원 중 1인은 승지), 정(1), 제거(정3~종3, 제검과 합해 4), 제검(정4~종4),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3), 참봉(3)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내수사

內需司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내수별좌(국초~세종 12년)를 개칭한 내수소를 세조 12년에 다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수용의 미포·잡물, 노비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전수(정5, 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 별제(정6~종6), 부전수(종6, 1), 전회(종7, 1), 전곡(종8, 1), 전화(종9, 2)가 있었다. 전수·부전수·별좌·별제는 서로 번갈아 임명하였다. 이조 속아문이나 때때로이조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57)

(마) 충익부

세조 2년 이래로 운영된 충익사를 세조 12년에 忠翊府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58) 原從功臣의 支待에 관한 일을 맡았고, 도사(종5) 2원이 있었다. 원종공신은 친공신보다 위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문도 제공신이 속한 충훈부가 독립아문이 된 것과는 달리 이조의 속아문이 되었다.

나) 내시부·액정서

(가) 내시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內侍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음식

⁵⁷⁾ 鄭鉉在、〈鮮初 內需司奴婢考〉(《慶北史學》3, 1981), 74\,

⁵⁸⁾ 기능 · 직제상으로는 태조 원년 이래로 운영된 원종공신소에서 비롯되었다.

물의 감독, 왕명의 전달, 궐문의 수직, 소제의 일을 맡았다. 尙膳(종2, 2), 尙醞(정3, 1), 尙茶(정3, 1), 尙藥(종3, 2), 尙傳(정4, 2), 尙冊(종4, 3), 尙弧(정5, 4), 尙帑(종5, 4), 尙洗(정6, 4), 尙燭(종6, 4), 尙烜(정7, 4), 尙設(종7, 6), 尙除(정8, 6), 尙門(종8, 5), 尙更(정9, 6), 尙苑(종9, 5)이 있었다. 관직은 그 수행하는 직사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내시부 관원은 문산계를 받고 그 최고 관원의 직질이 종2품이었다. 그러나 그 관원 모두가 宦者로 제수되었기 때문에 조관과 엄격히 구분되면서 정치 간여가 금지되고, 그 관아의 지위도 동반의 최하위 아문과 잡직 아문의 중간에 위치하는 천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시부관은 국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시중을 드는 관계로 일부 고위 환관은 정변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록되는가 하면,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상한 관계는 종2품이었지만 때로는 종1품계에까지 올랐다

(나) 액정서

掖庭署는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액정원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왕명의 전달과 알현(傳謁),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궐문 자물쇠와 열쇠의 관리, 궁궐 내정의 설비 등의 일을 맡았다. 司謁(정6, 1), 司鑰(정6, 1), 부사약(종6, 1), 司案(정7, 2), 부사안(종7, 3), 司鋪(정8, 2), 부사포(종8, 3), 司掃(정9, 6), 부사소(종9, 9)가 있었다. 관직은 그 수행하는 직사와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內豎로서 제수되었고, 잡직 체아직이었다.

나. 호조 속아문

가) 내자시 · 내섬시 · 사도시 · 군자감 · 제용감 · 사재감

(가) 내자시

內資寺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내부시를 태종 원년(1401)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義成庫가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궐내에 공급하는 쌀·밀가루[麵]·술·장·기름·꿀·채소·과물과 궐내의 연향 및 직조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정3품 당하, 1), 부정(종3, 1), 참정(종1, 4), 판관(종5, 1), 주부(종6, 1), 직장(종7, 1), 봉사(종8, 1)가 있었다.59) 주부

⁵⁹⁾ 내섬시 이하에 소속된 정 이하의 직질은 내자시 정 이하와 같다.

이상 4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내섬시

內贍寺는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한 德泉庫를 태종 3년에 혁파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각궁·각전에 대한 供上과 2품 이상에게 하사하는 술, 왜·야인에게 공급하는 음식물과 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은 내자시와 같다.

(다) 사도시

司襲寺는 성종 9년(1478)에 司襲署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60) 어용 창고의 미곡 및 궐내에 공급하는 장 등속의 물품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사섬시

司贍寺는 세조 6년(1460) 5월 이래로 운영된 典農寺를 6월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61) 일시 纂官署로 개칭되었다가 세조 12년에 다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다. 저화의 제조와 외거노비의 貢布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하였다.

(마) 군자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軍資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延慶宮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군수물자의 저장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 제주(1), 제주(1), 정(1), 부정(1), 첨정(2), 판관(3), 주부(3), 직장(1), 봉사(1), 부봉사(정9, 1), 참봉(종9, 1)이 있었다. 주부 이상 8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바) 제용감

濟用監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濟用庫를 태종 9년에 승격시키면서 성

^{60) 《}成宗實綠》권 95, 성종 9년 8월 신묘. 그러나 기능 직제장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요물고(태조 원년~태종 원년), 공정고(태종 원년 7월~세종 4년), 도관서(세종 4년 9월~세조 6년), 사선서(세조 6년 5월~세조 13년), 도관서(세조 13년 4월~성종 9년 8월 이전)에서 비롯되었다.

^{61) 《}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6월 신축·기능·직제상으로는 태종 원년 이래로 운영된 司贍署(태종 원년 4월~세조 6년 5월)에서 비롯되었다.

립하였고, 세조 6년에 都鹽署가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진헌하는 布物과 인삼, 하사하는 의복, 絲·羅·綾·緞, 彩色入染, 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4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사) 사재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室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3년에 전함을 만들고 수리하며 물품수송을 감독하던 司水監을 병합하였고, 세종 14년(1432)에 사수감계의 기능이 司水色으로 독립되어 나가고, 다음해에 紅軸局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 어물, 육류, 식염, 숯[燒木], 횃불[炬火]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첨정(1), 주부(1), 직장(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풍저창·광흥창·전함사·평시서·사온서·의영고·장홍고·사포서·양 현고

(가) 풍저창

(나) 광흥창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廣興倉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모든 관원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았다. 수(1), 주부(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전함사

세조 6년(1460) 이래로 운영된 轉運色이 典艦司로 개편되었는데, 그 시기는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이미 개칭되어 있었던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군함과 선박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제검(종4, 별좌·별제와 합해 5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가 있었다. 또 수운판관 2인과 해운판관 1인이 배속되었다.

(라) 평시서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되다가 세조 8년 7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승격된 경시서를 세조 12년에 平市署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市廛을 단속하고 도량형기를 공평히 하며,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영(종5, 1), 직장(1), 봉사(1)가 있었다.

(마) 사온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醞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의 술과 단술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영(1), 주부(1), 직장(1), 봉사(1)가 있 었다.

(바) 의영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義盈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延福宮을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기름·꿀·黃蠟·素物·후추[胡椒] 등의 물품에 관한 일을 맡았다. 영(1), 주부(1), 직장(1), 봉사(1)가 있었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사) 장흥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長興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興新宮을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席子·油芚·紙地 등의 물품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원은 의영고와 같다.

(아) 사포서

司圃署는 세종 7년(1425) 이래로 운영된 沈藏庫를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62) 園圃와 채소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사포(정6, 1), 별제(정6~종6, 별검과 합해 7인), 별검(정8~종8)이 있었다.

(자) 양현고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養賢庫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5년 풍저창에 합속되었다가 성종 14년에 복립되었다. 성균관 유생에게 미두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주부(1, 성균관전적겸), 직장(1, 성균관박사겸), 봉사(1, 성균관학정겸)가 있었다. 주부는 구임으로 하였다.

다) 5부(중·동·남·서·북부)

⁶²⁾ 기능·직제상으로는 태종 5년 정월 이전으로부터 태종 14년 12월까지 운영된 참장고·茶房(태종 14년~세종 7년 6월)에서 비롯되었다.

태조 4년(1395)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고려 개성의 5부제를 참작하여 중·동·남·서·북부를 설치하면서 성립되었다. 소관내 坊里 주민의 범법사건, 교량·도로, 頒火·禁火, 里門警守, 家垈측량, 檢屍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주부(중·동·서·남·북부 각 1), 참봉(각 2)이 있었다. 또 각 방에는 품외의 管領 1인을 두어 다스렸다.

다. 예조 속아문

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교서관·세자시강원·종학· 4학

(가) 홍문관

세조 2년(1456)에 집현전을 혁파한 이래로 문운의 진흥 및 유학자의 양성도모와 관련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면서 운영하여 온 예문관의 관원과 직장중에서, 성종 9년(1478) 본래의 예문관 직장·관원은 예문관으로 존치시키고구제의 집현전계 직장·관원을 弘文館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63) 궐내의 경적을 관장하고 문한을 다스리며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일을 맡았다. 관원은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성립 때의 그것에 부응교(1)를 새로이 두고박사(1)를 더 두게 되면서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 1, 겸), 제학(종2, 1, 겸), 부제학(정3 당상, 1), 직제학(정3, 1), 전한(종3, 1), 응교(정4, 1), 부응교(종4, 1), 교리(정5, 2), 부교리(종5, 2), 수찬(정 6, 2), 부수찬(종6, 2), 박사(정7, 1), 저작(정8, 1), 정자(정9, 2)로 규정되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제수되었는데, 부제학 이하는 경연의 참찬관 이하를 예겸하였고, 부제학 이하 부수찬 이상은 知製敎를 겸대하였다. 또 직제학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차하위 관직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로 遷轉시켰다. 관원은 그 후보자의 명단이 기록된 弘文錄에서 전형관의 천거(圈點)가 많은 자를 제수하였다.⁶⁴⁾ 홍문관관은 국왕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경사를 강론하고, 수시로 賜暇讀書와 賜物 및 승자·승직의 특전을 받았고, 대부분 대간으로 체직되는 등 당시의 엘리트 관인이 선망하는 관직이 되었다. 성종 13년

⁶³⁾ 崔承熙, 〈弘文館의 成立經緯〉(《韓國史研究》 5, 1970), 98~110\, 98.

⁶⁴⁾ 崔承熙, 〈弘文錄考〉(《大丘史學》15·16, 1970), 270~286\.

부터 20년까지의 시기에는 법제적인 직장, 성종의 호학 및 당대의 정치분위기 등은 감찰·언론기능도 행사하게 하였다.⁶⁵⁾

(나) 예문관

조선 개국 이래의 藝文春秋館을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며 예문관의 관원은 녹관으로, 춘추관의 관원은 겸관으로 충원하면서 성립되었다. 왕의 사령서를 창제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의정겸), 대제학(정2겸, 1), 제학(종2겸, 1), 직제학(정3 당하, 1, 도승지겸), 응교(정4, 1, 홍문관관겸), 봉교(정7, 2), 대교(정8, 2)가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였고, 봉교 이하의 관직을 처음 줄 때에는 의정부가 이조 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통감·좌전 및 중국의 여러 사서 중에서 강의를 행하게 하여 합격된 자를 채용하였다. 봉교 이하가 전직될 때는 품계가 낮은 자는 그 직에 준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차하위자를 차례 차례로 전임(次次遷轉)시켰다. 또 5품관 이하는 수령직을 거치지 않고도 4품이상에 승자하는 우대를 받았다.66) 대제학은 문한을 주장하였는데, 성균관대사성이나(국초) 지성균관사(성종 9년 이전) 또는 홍문관 대제학을 겸대한 경우는 文衡으로 불리면서 유림과 詞苑을 통할하고, 詞命·과거·文士課試·유학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67) 응교는 장래에 문한을 주관할 자로 예상되는 인물이 제수되었다.68)

(다) 성균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成均館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유학교육에 관한 일을 맡았다. 지사(정2겸, 1), 동지사(종2겸, 2), 대사성(정3 당상, 1), 사성(종3, 2), 사예(정4, 3), 직강(정5, 4), 전적(정6, 13), 박사(정 7, 3), 학정(정8, 3), 학록(정9, 3), 학유(종9, 3)가 있었다. 또 승문원·교서관과 함께 약간명의 權知가 있어 문과에 급제하고 실직에 제수되지 못한 인물이 제수되었다. 직강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 1인과

⁶⁵⁾ 崔異敦、〈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渦程〉(《震槽學報》61, 1986), 21~36쪽,

^{66) 《}成宗實錄》 권 11, 성종 2년 8월 신축.

⁶⁷⁾ 朴天圭, 〈文衡考〉(《史學志》6, 檀國大, 1972), 76~81\,

^{68) 《}成宗實錄》 권 90, 성종 9년 3월 신사.

봉상시 직장 이하 2인이 겸임하고 차례차례로 전임시켰다.

(라) 춘추관

조선 개국 이래의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 아문으로 분립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때그때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감사(정1, 2, 좌·우의정), 지사(정2겸, 2), 동지사(종2겸, 2), 수찬관(정3 당상겸), 편수관(정3~종4겸), 기주관(정5~종5겸), 기사관(정6~정9겸)이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홍문관의 부제학이하, 의정부의 사인·검상, 예문관의 봉교 이하 및 시강원의 당하관 2인,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승문원·종부시·6조의 당하관 각 1인이 겸임하였다.

(마) 승문원

承文院은 태종 5년 이전부터 운영된 文書應奉司를 태종 11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대문서와 교린문서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3, 3의정), 제주(무정수), 부제주(무정수), 판교(정3 당하, 1), 참교(종3, 1), 교감(종4, 1), 교리(종5, 2), 교검(정2, 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 문관으로 임명되었다. 판교는 성종 6년까지는 임기가 차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참교 이하는 겸직이었는데, 박사 이하는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다. 교검 이상이나 박사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 차례로 전임시켰다. 교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바) 교서관

校書館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교서감을 태종 원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조 12년에 典校署로 개칭되고 정3품 아문에서 중5품 아문으로 내려졌다가, 성종 15년에 교서관으로 복칭되고 정3품 아문으로 환원되었다. 경적의 인쇄・반포, 香祝・印章篆刻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판교(정3 당하, 1, 타관겸), 교리(종5, 1), 별좌(종5, 별제와 합해 4인), 별제(정6~종6), 박사(정7, 2), 저작(정8, 2), 정자(정 9, 2), 부정자(종9, 2)가 있었다. 모두문관을 임명하고, 篆文에 능숙한 자 3인을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다. 박사 이하는 의정부의 사록 1인과 봉상시의 직장 이하 1인이 겸임하였고. 차

례차례로 전임시켰다.

(사) 세자시강원

조선 개국 이래로 세자의 강학과 시위 등의 일을 담당한 세자관속을 태종 18년경에 世子翊衛司와 世子侍講院으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69)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일을 맡았다. 사(정1, 1, 영의정), 부(정1, 1, 의정), 이사(종1, 1, 찬성), 좌·우빈객(정2겸, 각 1), 좌부·우부빈객(종2겸, 각 1), 보덕(종3, 1), 필선(정4, 1), 문학(정5, 1), 사서(정6, 1), 설서(정 7, 1)가 있었다. 좌빈객 이하는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세종 17년(1435)으로부터 세조 2년까지는 집현전관 10인이 보덕 이하를 겸임하면서 강학을 전담하였다.

(아) 종 학

宗學은 세종 9년에 종친 자제의 교육을 강구하면서 성립되었고, 세종 11년에 독립된 學舍를 건립하면서 정립되었다. 종실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도선(정4, 1), 전훈(정5, 1), 사회(정6, 2)가 있었는데, 모두 성균관의 사성 이하 전적이상이 겸임하였다.

(자) 4학(중·동·남·서학)

四學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5부 학당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처음에는 사찰을 빌어 사용하였으나, 태종 11년 남부학당, 세종 4년 중부학당, 세종 6년 서부학당, 세종 10년 동부학당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정립되었다. 관내의 유생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 교수(중·동·남·서학 각 2)와 훈도(각 2)가 있었는데, 성균관의 전적 이하가 겸하였다.

나) 통례원·봉살시·예빈시·관상감

(가) 통례원

通禮院은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통례문을70) 세조 12년(1466)에 개

^{69) 《}太宗實錄》권 35, 태종 18년 6월 병술. 세자익위사가 世子官屬의 기능 중 陪衛를 관장하는 독립아문이 되었음에서 그 설치시기는 불명이지만 세자시강원도 이 때에 강학을 관장하는 관아로 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70)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閣門에서 비롯되었다.

칭하면서 성립되었으며 예의를 맡았다. 좌·우통례(정3 당하, 각 1), 상례(종3, 1), 봉례(정4, 1), 찬의(정5, 1), 인의(종6, 8)가 있었다. 그 직무 분장상 驢唱에 능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였다. 좌통례는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관직이었는 데,71) 결원이 생기면 우통례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제수하였으며 겸임관 6 인을 두었다.

(나) 봉상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奉常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태종 9년 전농시로 개칭되었다가 세종 2년(1420)에 봉상시로 복칭하면서 정립되었다.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정(1), 부정(1), 첨정(2), 판관(2), 주부(2),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문관으로 제수하였고, 주부 이상 6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정은 국초 이래로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다) 예빈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禮賓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고, 태종 3년에 義順庫를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빈객을 접대하는 연향과 宗宰에 대한 음식물 공급 등의 일을 맡았다. 제주(1), 정(1), 부정(1), 제검(정4~종4, 별좌·제검과합해 6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라) 관상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書雲觀이 태종 15년에는 禁漏房을 합속하였고 다시 세조 12년에 觀象監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천문·지리·曆數·占 算·測候·刻漏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영사(정1, 1, 영의정),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2), 천문·지리학교수(종6, 각 1), 직장(2), 봉사 (2), 부봉사(3), 천문·지리학훈도(정9, 각 1), 命課學훈도(정9, 2), 참봉(3)이 있 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서 임명하였고,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성종 13년(1482)까지는 천첩자도 제수되었으나, 그 이후는 양첩자 이 상이 제수되도록 개정되었다.72)

⁷¹⁾ 성종 6년 12월까지는 우통례도 당상관에 승진하는 관직이었다(《成宗實錄》 권62, 성종 6년 12월 임인).

다) 내의원·전의감·혜민서·활인서

(가) 내의원

內醫院은 태종 12년 이전에 전의감 내에 설치된 內藥房을 세종 25년(1443)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왕과 왕실의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부제주(1, 승지겸), 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3), 봉사(2), 부봉사(2), 참봉(1)이 있었다. 정 이하는 체아직이었다. 의정부·이조·예조와 함께 醫書習讀官의 책정에 참여하였고,73) 정은 3醫司로 통칭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업무를 총관하였다. 또 의술에 능통한 자는 어의로 뽑히었고, 정3품이 限品이었지만 국왕의 총애를 받아 종2품에까지 승진하고 동반직에도 제수되었다.

(나) 전의감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典醫監을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궐내 수용의 의약을 맞춰 공급하고, 양반의 질병을 구료하고 의약을 내려주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의학교수(2), 직장(2), 봉사(2), 부봉사(4), 의학훈도(1), 참봉(5)이 있었다. 주부 이상은 과거 합격자로 임명하였다. 取才에서 分數가 많은 자와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구임관과 교수・훈도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내의원이 대두하기까지는 의료사를 총관하였다.

(다) 혜민서

惠民署는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되고 세조 6년에 濟生院을 합속한 혜민국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의약과 서민의 질병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주부(1), 의학교수(2, 1인은 문관점), 직장(1), 봉사(1), 의학훈도(1), 참봉(4)이 있었다. 취재에서 분수를 많이 받은 자와 직장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고, 구임 이외는 체아직이었다.

(라) 활인서

活人署는 세종 19년 이전부터 운영된 동·서활인원을 세조 12년에 합칭하면서 성립되었다.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

^{72) 《}成宗實錄》 권 139, 성종 13년 2월 기묘, 사역원과 전의감도 같다.

^{73) 《}世祖實錄》 권 27, 세조 8년 2월 기묘.

(종6, 4), 참봉(2)이 있었다. 참봉은 의원 체아직이었다. 명칭상으로는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동소문 밖과 서소문 밖의 동·서 양소로 운영되었다.

라) 장악원 · 사역원 · 도화서

(가) 장악원

掌樂院은 세조 4년에 아악서와 전악서를 통합하면서 성립되고, 세조 12년에 악학도감을 합속한 장악서를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원년(1470)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74) 聲律의 교육과 교열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첨정(1), 주부(1), 직장(1)이 있었다. 음률을 해득하는 자와 첨정 이하 2 인은 그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고,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예악의 중시와 함께 제주에는 정1품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나) 사역원

司譯院은 태조 2년(1393)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중국어 음훈과 文字體式을 교습하기 위한 관청으로 성립되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2), 주부(1), 한학교수(4, 2원은 문신겸), 직장(2), 봉사(3), 부봉사(2), 한자훈도(4), 몽학·왜학·여진학훈도(각 2), 참봉(2)이 있었다. 교수·훈도 외에도 체아직이었다. 관원은 모두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중국·왜로의 사행에 교대로 따라갔다.75)

(다) 도화서

圖畫署는 태종 5년(1405) 이전부터 운영된 도화원을 개칭한 후신으로서 성종 9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도화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2)가 있었다. 별제는 본업인으로 제수되었다.

마) 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귀후서

(가) 소격서

^{74) 《}成宗實錄》권 3, 성종 원년 2월 신미.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관습도감(태조 원년~), 전악서(태조 원년~), 아악서(태조 원년~), 악 학(태종 6년~),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한 악학도감(세조 4년~)에서 비롯되 었다.

^{75) 《}世宗實錄》권 39, 세종 10년 3월 정해.

昭格署는 세조 12년(1466)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소격전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醮祭는 처음에는 소격전 이외에 大淸觀·太一殿에서도 거행하였으나, 태조 6년(1397)에 태일전이 소격전에 합속되고 세종 4년(1422)에 대청관이 혁거됨으로써 전장 관아가 되었다. 三淸星辰에 대한 초제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1), 영(종5, 1), 별제(정6~종6, 2), 참봉(2)이 있었다. 영·별제는 문관으로 임명하였다.

(나) 종묘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宗廟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寢廟를 수위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직장(1), 봉사(1), 부봉사(1)가 있었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사직서

社稷署는 세종 8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직단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사직단과 그 담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1), 영(1), 참봉(2)이 있었다.

(라) 빙 고

氷庫는 태종 5년(1405)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다. 동·서빙고에76)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좌(종5, 별제·별검과 합해 4인), 별제(정6~종6), 별검(정8~종8)이 있었다.

(마) 전생서

典牲署는 세조 6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典廢署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제물로 쓰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주부(1), 직장(1), 봉사(1), 참봉(2)이 있었다.

(바) 사축서

司畜署는 세조 6년 이래로 사축소에 합속되면서 폐지된 司臠所와 分禮賓寺 중 분례빈시를 세조 12년에 개칭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제물이 아닌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사축(종6, 1) 별제(종6, 2)가 있었다.

⁷⁶⁾ 동빙고는 祭享・供佛의 수용을 공급하였고, 서빙고는 御膳・賓食・백관반급의 수용을 공급하였다.

(사) 귀후서

歸厚署는 태종 14년 이래로 운영된 귀후소를 개칭하면서(예종 원년 이전)성립되고 예종 원년에 禮葬都監이 합속되면서 정립되었다.77) 관곽을 만들고, 그 和賣와 禮葬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 제주(1), 별제(종6, 6) 가있었다.

바) 문소전·연은전·각능전

(가) 문소전

文昭殿은 태조 7년 이래로 節妃 神懿王后韓氏의 신주를 봉안한 仁昭殿을 태종 8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14년에 태조·태종의 위패가 추가로 안치되었다. 도제주(2, 존속종친), 제주(2), 참봉(2)이 있었다.

(나) 연은전

延恩殿은 성종 6년(1475)에 德宗(추존, 성종의 생부)의 위패를 안치하면서 성립되었다. 제주(1, 문소전제주겸), 참봉(2)이 있었다.

(다) 각 능전

경기 내에 소재하는 健元陵(태조)・齊陵(태조비 한씨)・厚陵(정종·비)・獻陵(태종·비)・英陵(세종·비)・顯陵(문종·비)・光陵(세조·비)・昌陵(예종·비)・敬陵(덕종) 등 여러 왕・왕후의 능, 穆淸殿(태조, 개성)・奉先殿(세종, 양주) 등 여러 왕의 眞影을 모신 전각을 맡았다. 각각 참봉(2)이 있었다.

라. 병조 속아문

가) 5 위

문종 원년(1451) 이래로 운영된 오위진무소의 단위부대인 五司를 京侍衛諸 色 군사와 전국의 모든 군사를 각각 5등분하여 5위에 분속시킨 5위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세조 3년(1457)에 성립되었다.78) 義興衛(중위), 龍驤衛(좌위), 虎賁

^{77) 《}睿宗實錄》권 3, 예종 원년 정월 신사. 기능·직제상으로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棺槨色(태조 원년~태종 14년), 施惠所(태종 14년 2월~9월)에서 비롯되었다.

^{78) 《}世祖實錄》 권 7, 세조 3년 2월 을사.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삼군총제부, 의흥삼군부, 삼군부, 승추부, 삼군진무소, 오위진무소, 오위도총부 를 구성한 단위부대인 10위(태조 원년~), 10사(태조 3년~), 12사(태종 18

衛(우위), 忠佐衛(전위), 忠武衛(후위)를 합칭하는 명칭이다. 평시에는 병종별로 입직·행순하는 것이 주임무인 제색군사를 지휘하였다. 5위에는 장(종2. 12. 타관겸), 상호군(정3. 9), 대호군(종3. 14), 호군(정4. 12), 부호군(종4. 54), 사직(정 5, 14), 부사직(종5, 123), 사과(정6, 15), 부장(종6, 25), 부사과(종6, 176), 사정(정7, 5), 부사정(종7, 309), 사맹(정8, 16), 부사맹(종8, 483), 사용(정9, 42), 부사용(종9, 1939)이 있었다. 모두 서반 관계자가 임명되었고, 상호군 이하 3.236직 중 671 직만이 정직이고 2.564직은 체아직이었다.79) 위의 하위부대로는 部(5부가 1위) - 統(4통이 1부) - 旅(125인) - 隊(25) - 伍(5) - 卒(1)이 있었다.

의흥위에는 갑사ㆍ보충대. 서울의 중부. 개성부.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용양위에는 별시위·대졸, 서울의 동부, 경상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호분위에는 족친위·친위군·팽배, 서울의 서부, 평안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충좌위에는 충의위·충찬위·파적위. 서울의 남부. 전라도의 군사 가 속하였다. 충무위에는 충순위・정병・장용위. 서울의 북부. 영안도(함길도) 의 군사가 속하였다.

5위는 법제적으로 군무는 오위도총부의 지휘를 받고 행정은 병조의 감독 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위가 병조의 속아문이고, 오 위도총부의 군령권 행사가 병조와 횡적으로 협조하거나 병조의 지시를 받았 음과 관련되어 인사 등 행정은 물론 군무도 병조의 지휘를 받는 경향이 현 저하였다.80)

년~), 10사(세종 4년~), 12사(세종 27년~)에서 비롯되었다(閔賢九, 《朝鮮 初 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269~286쪽), 삼군총제부 이하의 운영시기는 앞의 (2)-나-나) 오위도총부조(74쪽) 참조.

⁷⁹⁾ 서반 체아직의 총수는 3.005직이었는데, 이 중 5위 제병종에 속하지 않는 선 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 391직과 취라치·태평소·습독관·제주자 제·제원·궁인·시인·의원·동몽훈 150직의 541직을 공제한 2,565직이 5위 병종에게 할당된 정원이었다. 이에서 5위에 속한 군직자 3.236직 중 체아직 2.565직을 공제한 671직의 관직적 성격 모호하여졌다. 이 671직은 지금까지의 군제관계 연구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격이 불명하 다. 그러나 뒤의 2-1)-(1)-나 무반직(104~107쪽)에서의 분석에 미루어 정직으 로 간주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서반 아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 2-1)-(2)-나 체아직(110~114쪽) 참조.

⁸⁰⁾ 閔賢九, 앞의 책, 286~287쪽.

나) 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훈련원

(가) 사복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僕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왕이 타는 수레, 말과 마구, 그리고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2)가 있었다. 판관 이상 2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마정의 중요성 때문에 의정을 역임한 인물이 제주를 겸대하거나 의정이 관아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나) 군기시

軍器寺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군기감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설립되었다. 병기를 제조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인), 판관(종5, 2), 별제(정6~종6), 주부(2),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2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병기 제조의 중요성으로 인해 의정이 관아의 일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다) 전설사

典設司는 태종 14년(1414) 이래로 운영된 忠扈衛를 제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하였다.81) 장막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수(1), 제검(정4~종4, 별좌·별제와 합해 5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가 있었다.

(라) 세자익위사

世子翊衛司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세자관속의 기능 중 세자시위를 담당한 기능과 관원을 태종 18년에 분리시켜 독립관아화하면서 성립되었다. 일시 혁거되었다가 예종 즉위년(1468)에 복설되었다. 동궁을 모시고 경호하는 일을 맡았다. 좌·우익위(정5, 각 1), 좌·우사어(종5, 각 1), 좌·우익찬(정 6, 각 1), 좌·우위솔(종6, 각 1), 좌·우부솔(정7, 각 1), 좌·우시직(정8품 각 1), 좌·우세마(정9, 각 1)가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무반이지만 직무 분장상 대개 공신이나 재상의 자제로 충원하였고, 經術之士 또는 端士이어야 한다는 점이 항상 강조되었다.

⁸¹⁾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막(~태종 3년), 충순호위사 (태종 3년 6월~태종 14년 8월)에서 비롯되었다.

(마) 훈련원

訓練院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훈련관을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군사의 재예를 시험하고, 무예를 연마시키며, 武經을 습독시키는일을 맡았다. 지사(정2, 1점), 도정(정3 당상, 2, 1인은 점), 정(1), 부정(2), 첨정(2), 판관(2), 주부(2), 참군(2), 봉사(2)가 있었다. 권지 약간명이 있었는데, 무과 출신자 중 실직에 제수되지 못하는 자가 제수되었다.

관원은 모두 무관으로 임용하되 부정 이하 주부 이상 1인은 문신으로 임용하였으며, 참군 이하는 군기시의 직장 이하 4인으로서 겸임하게 하여 점차로 전직시켰다. 또 습독관 30인이 있어 녹관·권지와 더불어《兵要》,《武經七書》,《通鑑》,《將鑑》,《博義》,《陣法》,《兵將說》을 습독시켰다. 정은 성종 6년부터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마. 형조 속아문

가) 장례워

掌隷院은 세조 12년 이래로 운영된 辨定院을 세조 13년(1467)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⁸²⁾ 노예의 장적과 노비 송사를 처결하는 일을 맡았다. 판결사(정3 품 당상, 1), 사의(정5, 3), 사평(정6, 4)이 있었다. 사의 이하는 모두 구임으로 하였다.

나) 전옥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典獄署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옥에 구류된 죄수에 관한 일을 맡았다. 부제주(1, 승지겸), 주부(1), 봉사(1), 참봉(1)이 있었다.

바. 공조 속아문

가) 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

(가) 상의원

尚衣院은 조선 개국 이래의 供造署를 태조 2년(1393) 이전에 개칭하면서

^{82) 《}世祖實錄》권 41, 세조 13년 정월 기사·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형조도관(~세조 12년)에서 비롯되었다.

성립되었고, 태종 16년(1416)에 奉書局이 합속하면서 정립되었다. 왕이 입는 의복 및 궐내의 재화·금보 등의 물품을 맡았다. 제주(2), 부제주(1, 승지), 정(1), 첨정(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 판관(1), 별제(정6~종6), 주부(1), 직장(2)이 있었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나) 선공감

繕工監은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선공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토목·영선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1),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판관 이상 1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다)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는 세종 4년에 도성 내외의 巡審을 위하여 설치한 성문도감과 세종 8년 2월 이전에 도성 내의 소방을 위하여 설치한 금화도감을 세종 8년 (1426)에 한 관아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세종 6년 성곽의 수리와 소방업무를 공조와 한성부로 이관하면서 폐지되었다가, 성종 12년(1471)에 복설되었다. 궁성・도성의 수축, 궁궐・관아의 건물 및 방리 각호의 소방 등의 일을 맡았다. 도제주(1), 제주(2), 제검(정4, 4, 3인은 사복시・군기시・선공감정겸), 별좌(정5~종5, 6, 4인은 의금부경력, 병・형・공조정랑 각 1인겸), 별제(정6~종6, 3, 1인은 한성부관관겸)가 있었다.

나) 전연사·장원서·조지서·와서

(가) 전연사

與涓司는 조선 개국 이래로 수창궁·경덕궁·경복궁·창덕궁 등에 설치되어 궁궐수선 등을 맡아 보던 提擧司를 세조 12년에 통합하면서 성립되었다. 궁궐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선공감제주겸), 제검(종4, 별좌·별제와 합해 5),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 직장(2), 봉사(2), 참봉(6)이 있었다. 직장이하는 체아직이었다.

(나) 장원서

掌苑署는 국초 이래로 운영된 東山色을 개칭한 상림원을83) 세조 12년에

^{83) 《}太宗實錄》 권 9, 태종 5년 3월 병신.

다시 고치면서 성립되었다. 苑囿, 화초와 과물 등의 관리를 맡았다. 제주(1), 장원(정6, 1), 별제(종6~종6, 3)가 있었다.

(다) 조지서

造紙署는 태종 15년 이래로 운영된 조지소를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하였다. 表箋紙와 咨文紙, 그 밖의 여러 가지 종이를 제소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사지(종6, 1), 별제(종6, 4)가 있었다.

(라) 와 서

瓦署는 태종 6년 이래의 별요와 세조 6년 이래의 와요를 통합한 기관인데, 성종 원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맡았 고, 제주(1), 별제(종6, 3)가 있었다.

2. 관직과 관계

1) 관 직

조선의 중앙관직은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관직을 계승하여 流品의 문·무반직과 流品外의 환관·內豎·악공직 등을 두고, 다시 문·무반의 여러 관직은 職事 여부와 관련하여 실직인 正職·兼職과 허직인 檢校·添設·同正職으로 구분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관직체계가 세조대까지 의정부와 6조 중심의 국정운영, 통치체제의 정비, 경비절감, 군역자의 우대, 신분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고보완되며 운영되었다. 문・무반의 정직은 6조 장・차관의 직질이 정3・4품에서 정・종2품으로 승질되기도 하나 종2품 이상직이 60여에서 40여로 감소되었다. 문・무반의 당상관이 겸한 겸직이 50여에서 150여로 증가하였다. 내수・악공・공상인・천예 등에게 수여된 잡류직이 동・서반 잡직으로 개편되었다. 有祿職인 검교・첨설・동정직이 혁거되고, 문・무반 체아직과 무반 무록직 및 허직인 影職・散職이 설정되었다. 퇴직 공신・유공 당상관에

게 녹봉을 지급하는 奉朝賀職, 연로자에게 散階를 수여하는 노인직이 설정 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모든 관직은 크게 문반·무반·잡직으로 구분되고, 이 위에 실직인 정직·검직·체아직·무록직과 허직인 영직·산직·봉조하·노인직, 1년에 연이어 네 차례 녹봉을 받는 정직과 근무한 때에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 및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직 등이 복합된 관직제로바뀌었다.

(1) 문반직·무반직·잡직

가. 문반직

조선 개국 때의 문반 경관직에는 정1품직인 문하부 영사·좌시중·우시중(각 1인) 이하 종9품직인 대청관 판관(2)에 이르는 613의 정직, 도평의사사판사(2, 시중점) 이하 전의감 겸주부(2, 종6품점)의 101겸직이 있었다.⁸⁴⁾ 이 때의 관직이 세조대까지 정직은 정치·경제상황, 각 관직이 속한 관아의 직장·지위 등과 관련되어 녹직, 체아직, 무록직으로 체계화되었다. 겸직은 당상관이 없는 아문의 통솔, 그 관아의 직장과 관련되어 정1품관으로부터 정3품 당상관이 겸한 영사·도제주·제주·부제주 등과 정3품 당하관 이하가 겸한 예문관 직제학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경관 문반직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본직·겸직을 통틀어 980직 이상이 있었다. 본직은 녹봉의 지급 여부 및 녹봉액과 관련되

^{84)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직질별로 본직 겸직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와 같다.

직질	정직	겸직	계	직질	정직	겸직	계	직질	정직	겸직	계	직질	정직	겸직
정1품	4	8	12	정4품	32	6	38	정7품	36		36			
종1	3		3	종4	30		30	종7	62		62	합계	613	101
정2	17	14	31	정5	33	4	37	정8	43		43			
종2	40	19	59	종5	30	13	43	종8	34		34			
정3	48	6	54	정6	42		42	정9	28		28			
종3	42	8	50	종6	61	23	84	종9	28		28			

〈丑 2〉

경관 문반직 일람표85)

직 질		본	직		겸직	계	직 질		본	직		겸직	周
직 질	녹직	체아직	무록직	계	召召	셰	식 설	녹직	체아직	무록직	계	召当	Al
정1품	4			4	28	32	정6품	63		14	77	11	88
종1	3			3		3	종6	90	8	40	138		138
정2	9			9	81	90	정7	14			14	1	15
종2	11			11		11	종7	40	17		57	1	58
정3	18			18	16	34	정8	13		3	16	1	17
당상 정3	28	4	1	33	4	37	종8	39	21	2	62	1	63
당하 종3	24	3	1	28		28	정9 종9	46 89	14 29		60 118	8	68 118
정4	15		6	21		23	기타*					8	8
종4	31	3	5	39		39	합계	617	105	95	817	163	980
정5	37	1	10	48	1	49						이상	이상
좋5	43	5	13	61		61							

^{*}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관 6, 봉상시 직장 이하가 겸한 성균관 박사 2.

어 617 녹직, 105 체아직, 95 무록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직은 그 관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왕에게 직접으로 정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등 直啓衙門의 관직, 6조나 6조·제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감·창·고·서 등 6조 속아문의 관직, 환관으로 제수되는 내시부의 관직으로 구분되었다. 직계아문의 관직명은 6조를 제외한 의정부·의금부·한성부·사헌부·승정원·사간원 등은 독자적인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6조는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6조 속아문은 각 관직이 소속된 관아의 격이 같은 경우 대개 직질이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즉, 정3품 아문인 시·감은 正一副正一歲正一判官一主簿一直長一奉事一副奉事, 종5품 아문인 서·고는 令一直長一奉事一副奉事, 종6품 아

^{8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李成茂는 앞의 책, 125쪽〈표 16〉에서 도 제주・제주・부제주와 경연・관상감・세자시강원 등의 겸직도 실직에 포괄시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녹직인 영의정 등의 겸직인 만큼, 이 글에서는 정직・체아직・무록직을 포괄한 본직과 구분하여 겸직으로 분류하였다. 또 인원수가 불명인 춘추관・경연관원은 제외하였다(다음의 무반직도 같다).

⟨표 3⟩

문반 겸직일람표

	관 직 명	수	소속 관아별 인원
정 1	도제주	18	승문원 3, 종부시·제전 각 2, 사옹원·군자감·전함
			사 · 봉상시 · 내의원 · 사역원 · 종묘서 · 사직서 · 군기시
			・수성금화사 각 1
	영 사	7	경연 3,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각 1
	감 사	1	춘추관
	사・부	2	세자시강원 각 1
종 1~	제 주 ¹	59	사용원 4, 종부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
종 2			혜민서 · 사복시 · 군기시 · 상의원 · 선공감 · 수성금화사
			·조지서 각 2, 내자시·내섬시·사도시·사섬시·군자
			감 · 제용감 · 사재감 · 전함사 · 평시서 · 사포서 · 봉상시
			·교서관·내의원·예빈시·소격서·종묘서·사직서·
			빙고·전생서·사축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제전
			·전연사·장원서·와서 각 1
종 1	판 사	1	의금부2
	이 사	1	세자시강원
정 2	빈 객	2	세자시강원
	대제학	2	홍문관・예문관 각 1
	지 사	5	경연 3, 의금부 ² ·성균관 각 2
종 2	동지사	7	경연 3, 의금부 ² ·성균관 각 2
	부빈객	2	세자시강원
	제 학	2	홍문관・예문관 각 1
정3상	부제주	9	사옹원 5, 승문원 ³ ·내의원·전옥서·상의원 각 1
	참찬관	7	경 연
정3하	직제학	1	예문관
	정	2	상서원·종부시 각 1
-> .	판 교	1	교서관
정 4	응 교	1	예문관
7) =	도 선	1	종 학
정 5	전 훈	1	종 학
정 6 콩 c	사 회	2	종 학
종 6	교수	8	4 학
7) 7	주 부	1	양현고
정 7	참 군	1	한성부
종 7	직 장	1	양현고
정 8	박 사	1	성균관
종 8	봉 사	1	양현고

정 9	훈 도	8	4 학
기	타 ⁴	8	
합	계	163	(정 3 당상 이상 125, 정 3 당하 이하 38) 직 이상

^{*1} 제주는 종1~종2품관이 겸대한 관계로 포괄하여 파악하였다. ^{2.} 의금부의 판사·지사·동지사의 수는 합해 4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균관의 그것을 참고하여 비정하였다. ^{3.} 승문원 부제주는 수가 불명하나 1인으로 비정하였다. ^{4.} 기타 8인은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 6인, 성균관 2인이다.

문인 서는 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의 체계였다. 각종 공작을 관장하거나 전문기술이 요청된 사용원 등에는 提擧—提檢—別坐—別提—別檢의 무록관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장례원, 홍문관·승문원·성균관·교서관·예문 관, 통례문(원), 세자시강원 등은 그 직장과 관련된 독자적인 관직명으로 운영되었다. 또 정직의 각 품별 관직수는 3품 이상은 正品과 從品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4품 이하는 정품은 소수였고 종품은 다수였다. 이 중 4품 이하 관직이 소속된 아문은 대개 정품직은 관아의 지위가 높은 아문이거나 문한기관이었고, 종품직은 시·감·창·고·서였다.

점직은 〈표 3〉과 같이 정1품 이하 정3품 당상관 이상이 125직이었고, 정3품 당하관 이하가 38직이었다. 겸직이 소속된 관아에는 의정부·6조 및 소수의 당상관 중심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전임관의 최고 직질이 정3품 당상관 이하 아문인 세자시강원, 문한기관, 시·감 등과 경연이 있었다. 겸직은그 직이 설치된 관아의 지위·직장과 관련하여 도제주 등 이하, 제주 등 이하, 부제주 등 이하가 등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승문원 도제주 등 중요한 겸직은 당연히 겸대할 정직(例兼職)이 명기되었다.86) 정4품 이하의 겸직은 그직장과 직결된 관아의 관직자가 겸임하였다.87) 겸직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지

^{86)《}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에 명기된 例兼職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승문원도제주, 경연·춘추관영사, 홍문관·예문관영사(혹은 좌·우의 정). 세자사.

좌의정: 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세자부(혹은 우의정).

우의정: 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좌찬성: 세자이사(혹은 우찬성).

도승지: 경연참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제승지: 경연참찬관.

승지 1인: 사용원·내의원·상의원부제주.

만 직사상 때로는 그 관아의 인사를 주관하는 기능을 행사하였는데, 충훈부의 君이 겸대한 경우는 정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

체아직과 무록직은 뒤의 〈표 6-ㄱ〉과〈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각 105직과 95직이 있었다. 체아직이 소속된 관아는 대개 기술관아였고, 그 관직에는 중인 이하의 신분자가 제수되었다. 무록직은 양반이 제수되는 관직이기는 하나 정직자가「10考 2中」이하의 고과에 따라 貶黜되면서 제수되고, 그 후 12개월이 지나야만 녹직에 제수될 자격이 부여되는88) 등 정직보다 열등하였다.

나. 무반직

조선 개국 때의 무반 경관직에는 10위의 상장군(정3, 10) 이하 종9품 정 (2,000)에 이르는 4,390의 정직,89) 의흥친군위의 도절제사·절제사·동지절제사, 8위의 판사·상장군 등의 겸직이 있었다.90)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 때까지 10위를 계승하면서 정립된 5위 관원에 중추부·오위도총부·내금위·겸사복·선전관·공신적장·훈련원·세자익위사의 관직이 무반직으로 조정되고, 이들 관직이 정직·체아직의 본직과 겸직으로 구분되면서 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관무반직의 겸직과 체아직은 그 수가 명확하였다. 그러나 정직에 있어서는 중추부·오위도총부·세자익위사·훈련원의 58직은 정직임이 명확하지만, 5위의 경우에는 정직의 존재여부와 몇 관직이 정직인

⁸⁹⁾ 태조 원년 7월 정미에 공포된 관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관아별	정3품	종3	정4	종4	정5	5품	6품	7품	8품	정9	종9	합계
10위	10	20	20	50		150	300	300	400	1,000	2,000	4,250
도부외					2		4	6	8	40	80	140
계	10	20	20	50	2	150	304	306	408	1,040	2,080	4,390

⁹⁰⁾ 각 관직의 정원은 불명하지만, 태조 원년 7월 정미의 인사에서는 도절제사 1, 절제사 2, 동지절제사 4, 판8위사 1, 8위상장군 1명이 제수되었다.

⁸⁷⁾ 예문관 응교는 홍문관 직제학 이하가, 종학·4학·양현고의 관원은 성균관사 성 이하가, 한성부 참군은 통례원 인의가, 성균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과 봉 상시 직장 이하가 각각 예겸하였다.

^{88) 《}經國大典》권 1, 吏典 褒貶. 《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정묘·권 223, 성종 19년 12월 무술.

가가 명확하지 못하였다. 즉, 5위의 정3품 당하관 이하 3,236직에 있어서 2,464직은 뒤의 〈표 6-ㄴ〉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체아직이지만, 772직은 그 관직적 성격이 불명하다. 이 772직의 직질과 인원을 서반체아직의 분포와 관련시켜 보면 상위직인 정3품 당하·종3품·정4품직과 정5·6·7·8·9품직은 1직도 체아직에 포함되지 않았다.91) 또 조선 초기의 인사를 보면 서반 체아직이 아닌 상호군(정3품)·대호군(종3품)·호군(정4품) 등이 지형조사·지사간원사·경기도경력 등을92) 겸대하였다. 이 때의 상호군 등은 정직이었다고 하겠다. 그 외에 상호군·대호군·호군 등은 동반의 여러 관직과 수시로 교체되었다. 이 점에서 이 772직은 정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국대전》에 규정된 무반 경관직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본직에는 정직 830직과 체아직 3,005직의 3,835직이 있었고, 겸직에는 34직이 있었다. 정직 830직은 58직이 중추부·오위도총부·훈련원·세자익위사의 관직이었고, 772직은 5위의 관직이었다. 체아직 3,005직은 6위가 2,464직이었고, 541직은 5위 이외의 겸사복·선전관·내금위·공신적장 391직과 취라치·태평소·습독관·제주자제·諸員·궁인·시인·의원·동몽훈도 등 150직이었다. 겸직 34직은 훈련원 지사(정2, 1), 오위도총부 도총관(정2, 부총관과합해 10)·부총관(종2), 장(종2, 18〈5위 12, 내금위·겸사복 각 3〉), 훈련원 도정(정3 당상, 1)·참군(정7, 2)·봉사(종8, 2)였다.

^{91) 5}위 당하관 이하 관직과 서반 체아직의 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정3	종3	정4	종4	정5	종5	정6	종6	정7	종7	정8	종8	정9	종9	합계
5위	1	9	14	12	54	14	123	150	201	5	309	16	483	42	1,939	3,236
체 아 직	5위 ② 겸사복 등 취라치 등 계	3	9		11 17 28		78 32 110		105 48 4 157		197 73 18 288		366 87 51 504		1,707 122 77 1,906	2,464 391 150 3,005
	1)-2)	9	14	12	43	14	45	15	96	5	112	16	117	42	232	772

⁹²⁾ 李承召、〈黄守身墓碑銘〉・〈鄭忠碩墓表陰記〉(《三灘集》;《韓國文集叢刊》11, 민 족문화추진회, 1988).

金守溫,〈韓繼美神道碑銘〉(《拭疣集》;《韓國文集叢刊》9,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石亨,〈年譜〉(《樗幹集》;《韓國文集叢刊》9, 민족문화추진회, 1988).

⟨표 4⟩

무반 경관직 일람표

직 질	١	콘	직	· 겸 직	합 계	직 질	اً ا	콘	직	· 겸 직	합 계
의 설	정직	체아직	소계	44	입 세	의 설	정직	체아직	소계	4 4	11 세
정1품	1		1		1	정6품	17		17		17
종1	2		2		2	종6	100	157	257		257
정2	6		6	6	12	정7	7		7	2	9
종2	7		7	23	30	종7	112	288	400		400
정3당상	9		9	1	10	정8	18		18		18
정3당하	10	3	13		13	종8	117	504	621	2	623
종3	16	9	25		25	정9	44		44		44
정4	12		12		12	종9	232	1,906	2,138		2,138
종4	50	28	78		78	합 계	830	3,005	3,835	34	3,869
정5	16		16		16						
종5	54	110	164		164						

^{*《}經國大典》 권 4. 兵典 京官職・番次都目 참조.

5위의 관직, 내금위·취라치 등의 군직과 체아직을 비교하여 보면 후자는 모두 체아직이고 5위도 3,236직 중 2,464직이 체아직이었음과 같이 군직의 대부분은 체아직이었다. 직질별 관직수는 정직·체아직 모두 정품은 소수이나 종품은 다수였는데, 특히 군직이 대부분인 4품 이하는 그 차이가 현격하였다. 당상관직은 모두 정직이지만 직사가 없는 당상관이 대기하는 중추부의 관직이었고, 당하관직은 대개가 체아직이었다. 체아직은 근무기간에 따라 受祿하였음은 물론, 陞資(加資)가 근무일수(仕數)에 의하여 행하여진 만큼93) 정직에 비해 크게 열등하였다. 또 문반직자가 피핵·근무성적·질병으로 좌천

^{93) 《}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에 규정된 병종별 분번수, 복무개월, 加階에 요하는 근무일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병 종	분번수	복무 개월	가계 일수	비고	병 종	분번수	복무 개월	가계 일수	비고
갑 사	5	6	62		정 병	8	2	64	
별시위	5	6	48		충순위	7	12	75	
친군위	2	12	56		족친위	장번		144	
파적위	5	4	106		충의위	장번		144	
장용위	5	6	62		충찬위	5	4	39	
팽 배	5	4	1080		보충대	4	4	1000	
대 졸	5	4	1080						

될 때 동품의 무반직에 제수되고, 파직문신이 서용될 때 무반직에 제수되었으며, 무반직자가 영전할 때 동품의 문반직에 제수되었다.94)

이러한 무반직의 구성과 대우에서 무반은 문반과 함께 양반으로 호칭되어 지나 문반에 비하여 그 지위·대우가 열등하였다. 무반직 내에서 중추부 등의 관직은 그 직사, 승자·대우 등에서 5위 군직자보다 우월하였다. 그러나 겸사복·선전관·내금위·공신적장은 그 직장과 관련된 무예, 국왕의 총애 및 신분에서 체아직이지만 정직과 같이 1년에 4번 녹봉을 받는 長番職이었다. 특히 선전관·내금위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첨절제사·만호·변방수령에 제수되고,95) 내금위는 집현전에 비교되는96) 등 높은 지위를 누렸다.

다. 잡직(체아직)

조선 개국 때의 잡직에는 환관·내수·악공 등 잡류로 제수된 내시부·액정서·전악서·아악서의 여러 관직이 있었다. 또 工商賤隷·良隷·所由·羅將·杖首도 공로에 따라 관직을 제수받았다. 이들은 유품외라 하여 문·무반과 구분되기는 하나 朝官의 반열에 들면서 사류와 혼잡되어 있었다.

잡류는 세종 11년(1429)까지는 사류와의 혼잡이 논란되기는 하나 그 대우상 문·무반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곧 사옹·사막·상의원·상림원·악공·도화원 관원의 조반참렬을 금지하고, 세종 12년에 서반 잡직을 따로설정하여 공상천예로서 守職하는 자를 그에 속하게 함으로써 조반과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26년에 서반 잡직계가 설정되고,97) 세조대에 동반 잡직계도 설정된 즉, 서반 잡직의 보완 및 동반 잡직의 설정에 따라 조반과 완전히 구별되었다.98) 세조 때의 잡직제가 《경국대전》의 편찬과

^{94) 《}成宗實錄》권 226, 성종 20년 3월 을유·권 257, 성종 22년 9월 정축. 金新,〈年譜〉(《顏樂堂集》;《韓國文集叢刊》15, 민족문화추진회, 1988), 성화 22년 7월·23년 2월.

^{95)《}經國大典》 권 4, 兵典 外官職・軍官.

^{96) 《}成宗實錄》권 7. 성종 원년 5월 계묘 • 권 19. 성종 2년 12월 정사.

^{97) 《}世宗實錄》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잡직계는 뒤 2)-(3) 〈표 12〉(119 쪽) 참조.

⁹⁸⁾ 李成茂는 앞의 책, 112쪽에서 세종 26년에 서반 잡직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면 서 동반 잡직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經國大典》의 잡 직계는 '세조조의 관제개혁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세 조대에 설정되었음을 시사하였다.

⟨표 5⟩

동·서만 잡직 체아직 일람표¹

반볕	l, 관아별	정6품	종 6	정 7	종 7	정 8	종 8	정 9	종 9	계
	공 조						工造1		工作2	3
	교서관						司準1		司勘1	2
	교서관 · 사섬시 · 조지서2						공조4		공작2	6
동	사용원		宰夫1		膳夫1		調夫2	飪夫2	烹夫7	13
	상의원				工製4		공조1		공작3	8
	사복시		安驥1		調驥1		理驥1		保驥1	4
	군기시				공제5		공조2		공작2	9
	선공감						공조4		공작4	8
	장악원	典樂1	부전약2	典律2	부전률2	典音2	부전음4	典聲10	부전성20	43
	소격서						尙道1		志道1	2
반	장원서		愼花1		愼果1	愼禽1	부신금1	愼禽3	부신수3	10
	액정서	司謁1 司鑰1	부사약1	司案2	부사안3	司鋪2	부사포3	司掃6	부사소9	27 1
	도화서		善畵1		善繪1		畵史1		繪史2	5
	소 계	3	7	4	18	5	26	21	57	141
서	파진군				勤事2		從事2		趨事3	7
	대 졸							隊長46	隊副554	600
护	팽 배							대장80	대부920	1,000
	소 계				2		2	126	1,477	1,607
힙	- 계	3	7	4	20	5	28	147	1,534	1,748

^{*1.《}經國大典》 권 1・4, 吏典 兵典 雜職 참조.

함께 명문화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잡직은 위의 〈표 5〉와 같이 동반에는 정6품 장악원 전악 등 15관아에 141직이 있었고, 서반에는 종7품 파진군 근사 등 3개 부대 에 1.607직이 있었다.

잡직은 모두 체아직이었고, 그에 제수된 자가 대개 양인 이하인 까닭에 문·무반직과 완전히 구별되면서 점차로 천역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양인인 자는 1계가 강등되면서 문·무반의 정직에 제수되기 때문에 미미하나마 문·무반직과 상통되었다.

^{* 2.} 서로 협의하여 직을 바꿔준다.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가. 실직 · 허직

조선 개국 초의 실직에는 문·무반의 정직과 겸직이 있었다. 이후 세조대까지 정직·체아직·무록직과 겸직으로 체계화되면서 정립되었고,《經國大典》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99)

조선 개국 초의 허직에는 검교·첨설·동정직이 있었다. 이후 세조대까지 검교직·동정직이 혁거되고 영직·산관직과 봉조하·노인직이 두어지면서 정립되었으며,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

검교직은 태종 14년(1414)에 그 수를 좌참찬에서 공조참의에 이르는 10명으로 축소하였다. 태종 16년에 내시부 검교를 제외한 모든 유록 검교직을 혁파하였고, 세종 26년(1444)에 내시부 검교를 녹관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유록 정교는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나 무록인 치사검교·거관검교·무록 검교등은 관직 진출의 체증 개선과 관련되어 얼마간 더 운영되었다.

첨설직은 태조 원년(1392)에 3품 이하 향리출신 첨설직 중 과거에 급제했거나 군공을 세운 자가 아닌 경우는 향리로 환원되었다. 태조 3년에는 첨설직을 이용한 陸職을 금지하고 이미 승직한 자도 徵馬하거나 직첩을 회수하였다. 태종 5년(1405)에 첨설 6조전서・의랑을 혁파하고 6시 7감의 판사・경・감 각 1인과 42都府外에 1領마다 각 5인씩을 삭감하였다. 이후 세종 19년(1437)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동정직은 태종대까지 初入仕職으로 제수되다가 세종대 이후에 소멸되었다. 영직은 세종 27년 경부터 조선 개국 이래의 첨설직·동정직 등 유급 산직에 대신하여 문·무 경관직자와 경아전에게 과전·녹봉을 지급하지 않고 조회 수반도 금지된 무급 산직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세조 7년(1461)에 근무 연한을 마쳤으나(仕滿) 관직이 부족하여 타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양반·양인인 경아전·조군·수군·정병 등을 대우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영직을 제

⁹⁹⁾ 본직·겸직은 앞의 2-1)-(1)-가·나(100~107쪽)와 1-2)·3)을, 체아직·무록 직은 뒤의 나(110~114쪽) 참조.

수하였다.《經國大典》의 편찬과 함께 파적위·장용위·정병·管領 거관자에게 그 무예·신분과100) 관련하여 각각 종5·종6·종5·종6품의 영직을 제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또 충순위가 근무일을 채우고 거관할 때 종5품계를 제수하는 산직이 있었다.101)

노인직은 세종조 이래로 연로한 노인에게 무급 산직을 수여하면서 비롯되었다. 성종 12년(1481)에 나이 80세 이상이 된 양·천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계가 없는 자(白身)에게는 관계를 부여하고, 산계자에게는 1계의 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고쳐졌다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당하관 이하는 면역의 특전에 그쳤지만, 당상관은 承蔭과 예우의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다.

奉朝賀는 세조 3년 이래로 퇴직한 유공공신·고급관료를 우대하기 위해 녹봉을 지급하는 奉朝請을 계승하여, 정3품 당상관직 이상을 역임한 공신· 공신적장·일반관인 15인에게 5과 이하의 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정립 되었고,102)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조선 초기 실직과 허직의 관직적 지위는 그 직사, 제수자의 신분·대우와 관련하여 실직은 잡직이나 허직보다 우월한 지위와 우대를 누렸다. 실직 중에서도 정직이 가장 우대되고 겸직과 체아·무록직의 순서였다. 허직은 실직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반인 경우는 소수나마 천거를 통해, 그 산관을 토대로 실직에 제수되어 문·무반직과 연관되었다.

나. 녹직(정직·체아직)·무록직(동반무록직·영직·산관직, 겸직·노인직)

조선 개국 초에는 현직자는 물론 전직자에게도 과전과 녹봉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현직자는 대개 녹직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조 때까지 의정부·6조와

¹⁰⁰⁾ 破敵衛는 양인이 木箭・片箭・走(1주)・力(1력)의 시험 후에 입속하였고, 壯勇衛는 천인이 목전・주(1주)・력(1력)의 시험 후에 입속하였고, 正兵은 하층 양반・양인이 군역으로 입속하였다. 관령은 한성부의 부 아래 행정단위인 방의우두머리로서 방 내의 질서유지, 세금징수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자였다.

^{101)《}經國大典》 권 4, 兵典 番次都目.

^{102) 《}世祖實錄》 권 41, 세조 13년 정월 계유. 봉조하는 녹봉을 받은 외에 정조· 동지·탄일 등 행사에 常服으로 肅拜할 수 있었다.

소수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통치, 관직제의 정비, 경비 절감책의 강구, 군역 거관자의 영직 수여 등에 따라 현직자로서 녹봉을 받지 못하는 무록직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 녹직도 정직인 중요 아문의 관직은 1년에 4번 녹봉을 받았지만(四孟朔連等受祿), 군소 기술아문과 군위아문에 소속된 체아직은 1년에 1~2번만 받았다.

《경국대전》상의 「4맹삭연등수록」의 관직은 앞의〈표 2·4〉에 제시된 모든 정직이 해당되었다. 체아직은 근무하는 기간에만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관직은 다음의〈표 6-¬·ㄴ〉에서와 같이 동반에는 내의원·관상감·전의 감·사역원정 각 1인으로부터 전연사 등의 참봉에 이르는 105직이 있었다. 이들 중 전연사의 관직을 제외한 모두는 기술관이 임용되는 관아에 속한103) 중인층 이하의 기술관에게 주어지는 관직이었다.

⟨표 6-¬⟩

동반 체아직 일람표

직질	관직	수	소속관아별 인원	직질	관직	수	소속관아별 인원
정 3	정	4	내의원·관상감·전의	종 8	계사	2	호조
종 3	부정	3	감·사역원 각 1 관상감·전의감·사역 원 각 1		심률 봉사	2 17	형 조 활인서 4, 사역원 3, 내 의원·관상감·전의감
종 4	첨정	3	"				· 전연사 각 2, 내수
정 5	전수	1	내수사	, .	=.	_	사 · 혜민서 각 1.
종 5	판관	5	관상감·사역원 각 2,	정 9		2	
			내의원 1.		부봉사	12	전의감 4, 관상삼 3, 내
종 6	주부	8	관상감·혜민서 각 2,				의원·사역원 각 2, 혜
			내의원 · 전의감 · 사역				민서 1.
			원·내수사 각 1.	종 9	회사	2	호 조
종 7	산사	1	호 조		검률	2	형 조
	명률	1	형 조		참봉	25	전연사 6, 전의감 5, 혜
	직장	15	내의원 3, 관상감ㆍ전				민서 4, 관상감 3, 사역
	, 0		의감 · 사역원 · 전연사				원・내수사・활인서 각
			· 활인서 각 2, 내수				2, 내의원 1.
			사ㆍ혜민서 각 1.	합계	105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¹⁰³⁾ 李成茂, 앞의 책, 127쪽.

⟨표 6-∟⟩

서반 체아직 일람표

직 질	관직수	소속 관아별 인원
정 3 품	3	선전관·겸사복·내금위 각 1
종 3	9	내금위 4, 겸사복·공신적장 각 2, 선전관 1
종 4	28	내금위 7, 겸사복·갑사 각 5, 공신적장·별시위 각 4, 선전관·
		친군위·충의위 각 1
종 5	110	갑사 59, 내금위 18, 별시위 12, 공신적장 7, 겸사복 6, 충의위 3,
		친군·족친위 각 2, 선전관 1
종 6	157	갑사 65, 내금위 28, 별시위 22, 공신적장 10, 겸사복 9, 충의위 8,
		친군·족친·충찬위 각 3, 취라치·태평소 2, 선전관·습독
		관·제주자제·장용위 각 1
종 7	288	갑사 134, 내금위 49, 별시위 37, 공신적장 17, 충의위ㆍ제원 각
		10, 겸사복 6, 친군·족친·충찬위·습독관 각 4, 취라치·태평
		소 3, 궁인·시인 2, 장용위 2, 선전관·제주자제 각 1
종 8	473	갑사 222, 별시위 82, 내금위 39, 공신적장 38, 제원·팽배 각 20,
		충의위 13, 대졸 11, 겸사복·습독관 각 9, 의원 7, 취라치·태
		평소 7, 족친위·충찬위 각 6, 궁인·시인 6, 친군위 4, 제주자
		제·장용위 각 2, 선전관 1
종 9	1,906	갑사 1515, 별시위 143, 공신적장 63, 내금위 44, 제원 32, 취라
		치·태평소 20, 충의위 18, 겸사복·습독관 각 14, 족친위 8, 충
		찬위 7, 친군위 6, 궁인·시인 6, 의원·제주자제 2, 선전관·동
		몽훈도 각 1
계	3,005	

^{*《}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 참조.

서반에는 선전관·내금위·겸사복 정3품 각 1직으로부터 갑사 1,515직 등 종9품 1,906직에 이르는 3,050관직이 있었다. 이 중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친군위·별시위·족친위·충의위·갑사·충찬위 등과 사역원·훈련원·관상감·전의감·습독관은 양반 자제들이 입속하는 병종 및직종이었다. 의원은 기술관이, 취라치·태평소·제주자제·동몽훈도 등은 양인이 각각 종사하는 관직이었다. 상의원·군기시의 궁인과시인, 승문원·상의원 사옹원·사복시·전설사의 동반잡직 제원, 장용대·대졸·팽배 등은양인과 천인이 각각 종사하는 관직이었다.104) 이들 체아직은 내금위 등의 정

¹⁰⁴⁾ 李成茂, 앞의 책, 130쪽.

〈丑 7〉

동반 무록관 일람표

직 질	관 직	수	소속 관아별 인원
정・종 3	제 거	2	사옹원
종·종 4	제 검	11	수성금화사 4, 사옹원・예빈시 각 2, 전설사・전연사・
			전함사 각 1
정 · 종 5	별 좌	23	수성금화사 6, 교서관・상의원・군기시・예빈시・전설
			사·전함사·전연사·내수사 각 2, 빙고 1
정・종 6	별 제	54	귀후서 6, 조지서·활인서 각 4, 수성금화사·장원서·
			사포서・와서 각 3, 호조・형조・교서관・상의원・군
			기시・예빈시・전설사・전함사・전연사・내수사・소
			격서·빙고·사축서·도화서 각 2
정 · 종 8	별 검	5	사포서 4, 빙고 1
합 계	95)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직과 같이 1년에 4회의 녹봉을 받았지만, 그 외는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연간 $1\sim2$ 회만 녹을 받았다.105)

잡직에는 앞의 \langle 표 5 \rangle 에서 살펴본 동반 141직, 서반 1,607직이 있었다. 이들 직에 제수된 자는 양인도 있었으나 대개 천류였고, 106) 그 녹봉액도 동·서반 정직자보다 적었다.

무록관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관직이었는데, 동반의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경관직에만 설치되었다. 무록관에는 위의 〈표 7〉에서와 같이 정·종3품 사용원 제거 1명 이하, 정·종 8품 사포서 별검 등에 이르는 95관직이 있었다. 무록관은 12개월만 근무하면 동반 정직에 제수될 수 있고, 정직과 같이 참상관은 「5考 3上」이상으로 참하관은 「3考 2上」이상으로 승자될 것이 규정되었다.107) 그러나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해도 승자되기 어려웠

¹⁰⁵⁾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은 4맹삭 連等受祿하였고, 족친위는 仕數의 다소에 따라 各等受祿하였고, 친군위는 당번 4맹삭 연등수록하였다. 별시위·장사는 당번 一等受祿하였고, 충찬위는 사수에 따라 付祿되었고, 의원은 遞兒 相遞受祿하였고, 濟州子弟는 親着多少 연등수록하였다(崔貞煥,《高麗·朝鮮時代 祿俸制研究》, 慶北大出版部, 1991, 306~309쪽).

¹⁰⁶⁾ 崔貞煥, 위의 책, 298~300쪽.

^{107)《}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고, 10考에서 2번 「中」을 받은 양반 정직자가 폄출되면서 제수되는 관직인¹⁰⁸⁾ 등 정직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무록관은 양반이 제수되는 실직이고, 정직과 상통되었음에서 영직·산직과는 판이하였다. 그외에 겸직도 녹봉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는 무록관이었다. 그러나 겸직은 녹직인동·서반 정직자가 겸대하는 관직이었음에서 순수한 무록관과는 달랐다.

2) 관계

조선 개국 초의 관계는 고려 공민왕대 이후의 문·무산계를 계승·보완하여 문·무산계를 두고, 문반·종친·의빈과 무반의 관계로 적용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세종 때 무산계에 9품계가 증치되고, 종래까지 문산계의 적용을 받던 종친·의빈을 위한 종친계·의빈계, 공상천예·조예·소유·나장·장수 등 잡류를 위한 동반 잡직계, 파진군·팽배·대졸 등을 위한 서반 잡직계, 평안·함경도의 토관을 위한 동·서반 토관계를109) 각각 제정하면서 정립되었다. 세종대의 이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었다.

관계의 획득은 산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과거급제, 공신·원종공신에의 책록, 代加 등에 의하였다. 관계의 승진도 산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과거(중시)급제, 고과성적, 근무일수(5위제병종), 군공, 공신·원종공신에의 책록, 국왕즉위, 왕세자의 책봉이나 탄생, 大行王의 祔廟, 문·무관장권시, 대가등에 의하였다.110)

^{108)《}經國大典》권 1, 吏典 褒貶. 10考 중 3中이면 파직이고, 5考나 3考 중 한 번 이라도 中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직을 줄 수 없고 2中인 자는 파직되며, 당 상관 수령은 1中이라도 파직되었다.

¹⁰⁹⁾ 이글의 주제상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에 대해서는 李成茂, 앞의 책, 107~ 109쪽 참조).

¹¹⁰⁾ 崔承熙,〈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震檀學報》60, 1985), 8~16쪽. 韓忠熙,〈朝鮮 世祖~成宗代의 加資濫發에 대하여〉(《韓國學論集》12, 1985), 172~187쪽.

(1) 문산계와 무산계

가, 문산계

조선의 문산계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문산계를 계승하여 정1품 特進輔國 崇祿大夫・輔國崇政大夫로부터 종9품 將仕郞까지 30계를 두면서 성립되었 다. 태종 원년(1401) 경에 정1품 특진보국숭록대부가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 정되고,111) 태종 11년 이전에 보국숭정대부가 보국숭록대부로 개정되면 서112) 정립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명문화된 동반 품계는 다음의〈표 8〉과 같다.

⟨₩ 8⟩

동반 관계 일람표

품	계	품	계
정1품	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	정5품	通德郎・通善郎
	輔國崇祿大夫	종5품	奉直郎・奉訓郎
종1품	崇祿大夫・崇政大夫	정6품	承義郎・承訓郎
정2품	正憲大夫・資憲大夫	종6품	宣教郎・宣務郎
종2품	嘉靖大夫・嘉善大夫	정7품	務功郎
정3품	通政大夫(당상관)	종7품	啓功郎
	通訓大夫(당하관)	정8품	通仕郎
종3품	中直大夫・中訓大夫	종8품	承仕郎
정4품	奉正大夫・奉列大夫	정9품	從仕郎
종4품	朝散大夫・朝奉大夫	종9품	將仕郎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나. 무산계

조선의 무산계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무산계와 당·송의 무산계를 참용

¹¹¹⁾ 정종 2년에 閔霽가 특진보국숭록대부 우정승에 제수되었음이 확인되고(《國朝 人物考》閔霽碑銘), 태종 원년에 成石璘이 대광보국숭록대부였음이 확인되었 다(《國朝人物考》成石璘碑銘)

¹¹²⁾ 보국숭록대부는 태종 11년에 盧崇에게서 최초로 확인된다(《浩亭集》 盧崇墓誌 銘). 그러나 특진보국숭록대부가 태종 원년경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정되었고, 태종 원년에 직제가 크게 정비되었음에서 태종 원년 경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여 정3품(상) 折衝將軍으로부터 종8품 修義副尉에 이르는 20계를 두면서 성립되었다.¹¹³⁾ 이에 따라 조선의 무반은 고려의 무반과는 달리 무산계를 받게 되었고, 무과까지 실시되어 문반과 함께 명실상부한 양반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세종 18년(1436) 윤6월에 명제의 영향을 받아 "동반직에는 9품계가 있을 뿐 아니라 권무직까지 있어서 차례로 진급하는 데 비하여 서반직에는 9품계가 없으므로 유외직인 隊正・隊副에서 직접 8품계로 승자하는 것은 순자법에 위배된다. 9품을 가설하여 그 폐를 개혁하라"114)는 전교에 따라 정9품 진무부위와 종9품 진의부위가 설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서반 유외적인 대장・대부를 서반 정직인 정9품 사용으로 바꾸는 군직개편이 있었으니, 이는 9품계의 설치와 표리가 된 것이었다. 또 세종 29년에 서반 6품직으로부터 8품직까지도 기존의 종품직에 추가하여 정품직을 두게 되었다. 이로써 서반관계는 외형상 동반관계・동반관직 체계와 대등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세종 29년의 서반관계가 세조 12년(1466)까지 대폭적인 階

¹¹³⁾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성종 14년(995) 이전에 당·송의 무산계를 도입하여 종1 품 驃騎大將軍으로부터 종9품(하) 陪戎副尉에 이르는 29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무산계는 조선과 같이 무반의 산계로 운용된 것이 아니고, 향리·탐라의 왕족·여진의 추장·노병·공장·악인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무반은 동반과 같이 문산계를 받았다. 당·송의 무산계는 종1품 표기대장군으로부터 종9품 배융부위에 이르는 17계(당)와 31계(송)가 운영되었으나 고려와는 달리 무반의 산계로서 운용되었다. 또 그 구성도 고려와 같이 종1품으로부터 종9품까지가 망라되고는 있으나 종1품~종2품은 각 품에 1계만 있고 정3품이하는 각 품당 2계가 있었으며, 관계명은 종1품~정3품은 某某大將軍 종3품~종5품은 某某將軍이고 정6품 이하의 경우 각품의 상계는 某某校尉이고하계는 某某副尉였다. 조선 개국 때의 무산계는 다음과 같다(《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품	계	품	계	품	계
정3품	折衝將軍, 果毅將軍	정5품	忠毅校尉, 顯毅校尉	정7품	敦勇副尉
종3	保義장군, 保功장군	종5	顯信교위, 彰信교위	정7	進勇부위
정4	威勇장군, 威毅장군	정6	敦勇교위, 進勇교위	정8	承義부위
종4	宣節장군, 宣略장군	종6	承義교위, 修義교위	종8	修義부위

^{114) 《}世宗實錄》 권 73, 세종 18년 윤 6월 계미.

名改定을 거쳐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 〈표 9〉와 같이 명문화되었다.

⟨₩ 9⟩

서반 관계 일람표

苦	계	품	계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	정5품	果毅校尉, 忠毅校尉
	보국숭록대부	종5품	顯信교위, 彰信교위
종1품	숭록대부·숭정대부	정6품	敦勇교위, 進勇교위
정2품	정헌대부·자헌대부	종6품	勵節교위, 秉節교위
종2품	가정대부・가선대부	정7품	迪順副尉
정3품	折衝將軍(당상관)	종7품	奪順부위
	禦侮將軍(당하관)	정8품	承義부위
종3품	建功장군・保功장군	종8품	修義부위
정4품	振威장군・昭威장군	정9품	效力부위
종4품	定略장군, 宣略장군	종9품	展力부위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2) 종친제·의빈계

가. 종친계

종천은 처음에는 문반에 포괄되어 문산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세종 25년 (1443)에 당시까지 이루어진 관제정비, 宗親不仕의 천명과 관련하여 정1품 현록대부(상), 흥록대부(하)로부터 정6품 집순랑(상)·종순랑(하)에 이르는 22산계가 제정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 〈표 10〉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丑 10〉

종친계 일람표

품	계	품	계
정1품	顯祿大夫, 興祿大夫	종3품	保信대부, 資信대부
종1품	昭德대부, 嘉德대부	정4품	宜徽대부, 廣徽대부
정2품	崇憲대부, 承憲대부	종4품	奉成대부, 光成대부
종2품	中義대부, 正義대부	정5품	通直郎, 秉直郞
정3품	明善대부(당상관)	종5품	謹節랑, 愼節랑
	彰善대부(당하관)	정6품	執順랑, 從順랑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나. 의빈계

의빈은 처음에는 문반에 포괄되어 문산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세종 26년에 당시까지 이루어진 관제정비, 儀賓不仕의 천명과 관련하여 정1품 수록대부(상)·성록대부(하)로부터 종3품 명신대부(상)·돈신대부(하)에 이르는 12산계가 제정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 〈표 11〉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 11⟩

의빈계 일람표

품	계	품	계
정1품	綬祿大夫, 成祿大夫	종3품	奉順대부(당상관)
종1품	光德대부, 崇德대부		正順대부(당하관)
정2품	奉憲대부, 通憲대부	종3품	明信대부, 敦信대부
종2품	資義대부, 順義대부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3) 잡직제

조선 개국 초의 잡직관은 잡류로 불리면서 문·무산계의 적용을 받았고, 또 동·서반 잡직계가 구분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內豎·악공의 유외직과 공상천예·조예·소유·나장·장수 등 잡류는 문·무산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세종 12년에 잡류와 문·무반이 조반에 혼잡된 문제를 시정하려고 설정된 서반 잡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종 26년(1444)에 정5품 봉사교위(상)·봉무교위(하)로부터 종8품 상공부위에 이르는 12서반 잡직계를 두면서 비롯되었다.115) 이후 세조대까지 서반 잡직계는 정6품이 상한이되고 정·종9품계가 설정되며, 그 산계명도 대폭 개칭되어 정6품 봉임교위(상)·수임교위(하)로부터 종9품 근력부위에 이르는 10계로 고쳐졌다. 이에 덧붙여 정6품 전악으로부터 종9품 부전성 등에 이르는 동반 잡직자의 제수를 위한 정6품 공직랑(상)·여직랑(하)으로부터 종9품 전근랑에 이르는

정5품 奉事校尉·奉務교위 종6품 愼功교위·愼課교위 정8품 典功부위 종5품 承進교위·承供교위 정7품 服効副尉 종8품 尙功부위 정6품 修任교위·修職교위 종7품 服勤부위

^{115) 《}世宗實錄》 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서반 잡직계는 다음과 같다.

10동반 잡직계가 설정되면서 정립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 〈표 12〉와 같이 명문화되었다.

〈표 12〉 동·서반 잡직계 일람표

품	동반 잡직계	서반 잡직계
정6품	供職郎(상), 勵職郎(하)	奉任校尉(상), 修任校尉(하)
종6품	勤任랑, 効任랑	顯功교위, 迪功교위
정7품	奉務랑	騰勇副尉
종7품	承務랑	宣勇부위
정8품	勉功랑	猛健부위
종8품	赴功랑	壯健부위
정9품	服勤랑	致力부위
종9품	展勤랑	勤力부위

^{*《}經國大與》 권 1・4、 吏典・兵典 雜職 참조.

동·서반 잡직계의 승자는 문·무산계와 같이 참상관은 「5考 3上」, 참하관은 「3考 2上」의 고과 성적에 의하였다. 116) 그러나 잡직은 1년에 4都目으로 교체된 만큼 승자가 크게 지체되었고, 정6품이 한품이었다. 또 잡직자는 극소수가 동·서반 정직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신분적인 지위 등과 관련되어 1계를 내려서 제수받는 117) 등 차별을 받았다.

잡직계는 그 소지자의 신분, 상한 품계 및 문·무관직에 제수될 때의 차별로 보아 문·무산계는 물론, 종친·의빈계보다 열등하였다. 문·무산계는 외형적으로는 대등하게 규정되었지만, 문반 중심의 국정운영 및 그 소지자의 신분 등과 관련되어 문산계가 무산계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또 양반은 정1품에까지 제한없이 오를 수 있었으나, 중인은 원칙적으로 정3품 당하관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 즉, 기술관·서얼은 정3품 당하관에까지, 토관·향리는 정5품에까지, 녹사는 종6품에까지, 서리는 종7품에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118)

^{116) 《}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권 4. 兵典 京官職.

^{117)《}經國大典》권 1, 吏典 雜職.

¹¹⁸⁾ 李成茂,〈官職制度를 通해 본 朝鮮初期 兩班의 身分的 地位〉(《國民大論文集》 11, 1976), 122쪽.

3) 관직과 관계

관직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제수되었고, 관계는 관직 제수의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동반직·서반직·잡직에 제수되기 위하여는 각각 문산계·무산계·잡직계를 가져야 하였고, 그가 가진 산계의 고하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관직에 제수되었다. 동시에 각자의 신분과 관련되어 양반은 정1품직까지 제한을 받지 않고 제수되었다. 그러나 중인인 기술관·서얼·토관·향리·녹사·서리는 원칙적으로 정3품 당하관직 이하에 제수되었고, 청요직에도 제수될 수 없었다. 천류는 잡직의 정6품직 이하에만 제수되었다.

관직의 제수에는 관품과 관계를 상응시키는 상당직(當品) 제수, 관직이 높고 관계가 낮은 守職 제수 및 관직이 낮고 관계가 높은 行職 제수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행직 제수는 제한이 없었지만 수직 제수는 7품은 2계를, 6품 이상은 3계를 각각 뛰어 넘어서 제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119) 관직제수의 실제를 보면 문종대까지는 상당직 제수가 대부분을 점하면서 부분적으로 행수직 제수가 행하여졌고, 행수직 제수도 1~2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단종대 이후에는 매우 잦아진 대대적인 공신책록, 軍功加資, 追恩加資 등 가자의 남발로 인한 관인의 고계화에 따라 행직 제수가 크게확대되었다. 행직 제수는 성종대에 "당상관 100여 명이 8・9품의 군직에 행직 제수되었고, 당상관들이 遷轉의 기회를 넘겨다 보는 마음에서 녹이 없는 체아직까지 사양하지 않았다"120) 라고 하였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제수가 성행하였다.121) 반면에 수직 제수는 그 수도 적고 제수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았다.

관직을 제수할 때 개국 직후에는 정1품 이하의 모든 관인이 대간의 署經을 거쳐야 하였다. 이후 성종 원년(1470)까지 1~3품이나 1~4품은 국왕의 승인만으로 임명장을 내는 官敎에 의하나, 4~9품 또는 5~9품은 서경에 의하

^{119)《}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120) 《}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계해·권 82, 성종 8년 7월 임오.

¹²¹⁾ 韓忠熙, 앞의 글(1985), 172~193쪽.

고, 1~9품 모두 서경이나 관교에 의하였다가, 1~4품은 관교, 5~9품은 서경으로 고정되면서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122) 또 문산계·무산계·종친계·의빈계·잡직계를 보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문반·무반·종친직·의빈직·잡직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문반이 좌천되면 무반직에, 종친·의빈이문·무반직에, 무반이 문반직에 각각 제수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는 그 산계도 제수되는 관직에 따른 산계로 전환되었다.

〈韓忠熙〉

¹²²⁾ 崔承熙, 앞의 책, 52~59쪽. 조선 초기 대간의 서경 범위는 앞장 사헌부 주 32) 참조.